

월간 재정포럼

권두칼럼

조세는 우리 미래에 무엇을 해 줄 수 있나?
박 훈

현안분석

일본의 지방재정대책과 지방재정계획
원종학

정책연구

연금과세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외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2025년 세금 사기 사례 발표 외





음팩이미지 바로가기



재정포럼 바로가기

월간 재정포럼



월간 재정포럼

2025년 4월 17일 발행

통권 제346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2 E-mail: pub@kipf.re.kr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인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신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주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조혜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제작	길민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행정원
디자인·인쇄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TEL 02-2269-9917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KIPF

CONTENTS

권두칼럼

04

조세는 우리 미래에 무엇을 해 줄 수 있나?

박 훈 | 서울시립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현안분석

10

일본의 지방재정대책과 지방재정계획

원종학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책연구

32

연금과세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오종현·권성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상거래 관련 관세제도 연구

정재호·김한성

종합부동산세의 경제적 효과 및 향후 정책 방안

송경호

파레토 효율성 측면에서의 조세-이전 체계 평가

최인혁·문지용

조세 및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분석

고지현·고창수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52

미국-2025년 세금 사기 사례 발표 외

주요국의 조세동향 / 주요국의 재정동향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권두칼럼



조세는 우리 미래에 무엇을 해 줄 수 있나?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조세는 우리 미래에 무엇을 해 줄 수 있나?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한국세법학회 회장

들어가며

최근 조세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글로벌 디지털세 논쟁이 세계적인 세금전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을 계기로 중산층을 겨냥한 다양한 감세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반복된 세수 결손은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세수 예측이 번번이 틀린다는 비판도 있으나, 세계경제가 요동치는 현실에서 세제 운용 역시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조세는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장치

세금은 단순한 징수 수단이 아니라 국가가 미래를 설계하고 공동체의 방향을 잡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다. 조세는 국가 재정의 기초이자 사회정책의 촉매로 작동하며, 경제성장과 복지, 미래산업 육성과 지방자치 재정자립, 그리고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다층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세는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장치다. 정부는 세입을 바탕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교육과 과학기술에 투자하며,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나 공익법인을
 통한 사회 환원
구조 강화는
자발적인 부의
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수단이다.

펼칠 수 있다. 특정 산업에 대한 조세지출을 통해 민간의 활력을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인세율 인하나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은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성장 기반을 넓히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유럽은 미국 IT기업에 대한 디지털세를 도입하며 조세주권을 강화했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미국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에 따라 정책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우리 역시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조세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1인당 GDP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이미 일본을 앞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평가받지만, 산업 구조상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급변하는 기술 변화 속에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조세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 수단이자,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의 한 축으로 기능해야 한다.

조세제도가 공정한 기회와 책임을 함께 제공하는 구조로 진화해야

조세는 또한 사회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현실에서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의 누진구조는 부의 재분배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단순히 부자 증세만을 외치기보다는 합리적 세부담 조정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 예컨대,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나 공익법인을 통한 사회 환원 구조 강화는 자발적인 부의 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수단이다. 특히 주식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은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방 이후 짧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고도성장을 이뤄냈다. 그 이면에는 도전적 기업가 정신과 정부의 전략적 산업 육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조세제도가 있었다. 물론 일부 대기업과의 정경유착 문제도 존재했지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한 몇몇 대표기업의 성공은 조세정책이 산업정책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업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조세제도가 공정한 기회와 책임을 함께 제공하는 구조로 진화해야 한다.

조세의 정의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장려세제처럼 복지와 조세가 결합된 형태는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기본소득이나 디딤돌소득과 같은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논의와도 연결된다. 다만 선심성 감세경쟁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공약이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조세 설계가 필요하다.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세 분권도 절실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중요하다. 생성형 AI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은 미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다. 정부가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세제 지원을 병행한다면 민간 기업의 투자 확대와 더불어 국가 전체의 성장 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 이때 국가가 단순 지원자가 아니라 공동 투자자라는 관점에서 성과 평가와 구조 혁신을 병행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과거 정경유착의 부작용을 우려하지만, 지원받는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투명한 관리체계를 전제로 한다면 장기적인 국가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세 분권도 절실하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조정,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가 자체 세입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의 의존도가 높아, 지방의 독립성과 효율성 모두가 제약받는 구조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재정의 주체로 기능하며 주민의 평가를 받는 체계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목의 신설과 조정권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초기 지방자치 시기에 방만한 지출과 호화청사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율과 책임의 원리에 따라 재정운영의 성숙함을 보여주어야 할 시점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조정,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가 자체 세입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의지와
국회의 역할, 그리고
국민의 참여가
어우러질 때,
조세는 단순한
부담이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거듭날 수 있다.

조세는 단순한 부담이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

국가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는 적절한 조세부담률 확보가 필요하다.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조세부담률 설정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다. 세외수입이나 국채 발행은 일시적 보완 수단일 뿐, 지속가능한 국가 운영을 위한 기본은 조세 수입이다. 지금이야말로 조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제 운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다.

조세의 방향은 결국 국민과 정치가 결정한다. 국회의 입법 활동은 물론 대통령 선거에서의 조세공약 역시 중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 감세냐 증세냐의 이분법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재정과 미래 준비를 위한 실질적 근거를 제시하는 세제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의지와 국회의 역할, 그리고 국민의 참여가 어우러질 때, 조세는 단순한 부담이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거듭날 수 있다. 

현안분석



일본의 지방재정대책과 지방재정계획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jweon@kipf.re.kr

일본의 지방재정대책과 지방재정계획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론

경찰, 소방, 도로나 하천 등 사회기반 정비를 비롯하여 복지, 교육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서비스 제공은 그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구조, 인구규모, 지리적 조건 등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므로 각각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형태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조달 및 지출 등의 경제활동을 지방재정이라고 한다. 중앙정부의 재정은 주체가 하나이나, 지방재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포괄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총칭이다.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의 재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이 조달하는 수입에 비해 지출이 크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는 지방공공단체의 재원은 지방세 등 자주재원을 가지고 마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세원의 편재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역 사회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일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수가 적은 지자체에도 재원을 보장하기 위한 기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을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제도이다.

지방교부세제도에서는, 연도별로 지방교부세 법정률분 등과 지방재정의 수지 전망에 따른 소요 재원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형태로 총액으로서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필요 지방재원을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방재정대책이다. 지방재정대책은 나라마다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형태는 일본이라고 하겠다.

일본에서는 지방공공단체가 인구나 산업 분포 등의 차이로 인한 지역 간 격차나

지방의 주된 수입원인 지방세보다 더 많은 금액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고 있다는 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원 측면에서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경기의 동향에 따른 세수의 연도별 격차가 발생하여도, 주민생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세입과 세출을 전망한 ‘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여,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지방재정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논의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방재정계획이란 무엇이며, 정부 간 재정조정제도로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자원 배분

[그림 1]은 2022년도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나타낸 것이다. 2022년도 조세총액은 119.4조엔인데, 이 가운데 국세가 76.3조엔이며 지방세는 43.0조엔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64:36이다. 세출을 보면 세출 총액은 208.4조엔인데, 이 가운데 중앙 세출은 91.9조엔이며 지방 세출은 116.6조엔으로 44:56의 비율로 지방 세출이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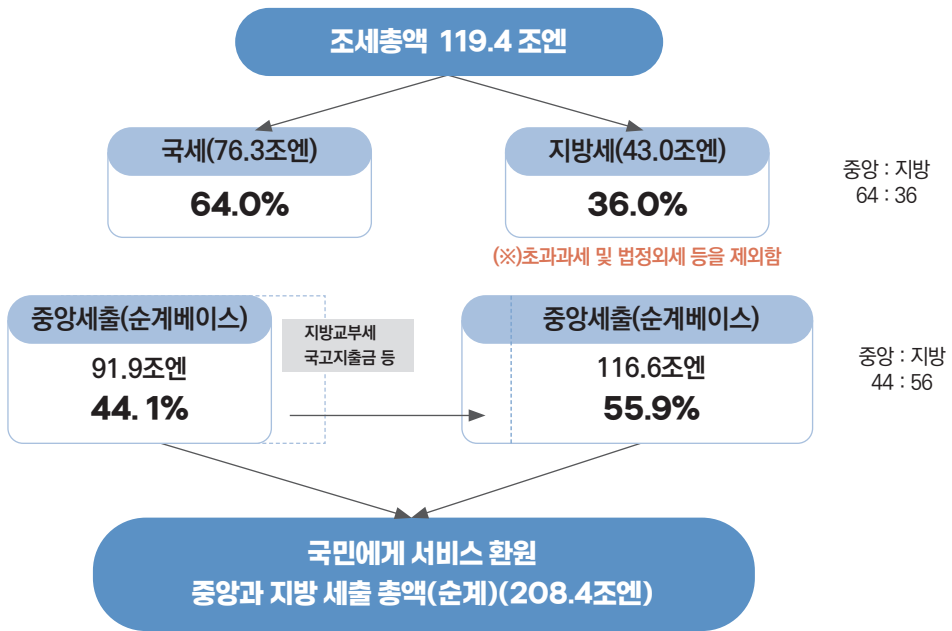
일본의 재정은, 최종지출 베이스에서 중앙과 지방의 비율과,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수입 배분에서 중앙과 지방의 비율이 역전되어 있으며, 양자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한다. [그림 1]의 하단에 제시된 지방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지방세입 가운데 지방세는 약 44조엔으로 전체 세입의 36.1%이며, 지방교부세 등이 약 22조엔으로 17.7%, 국고지출금이 약 27조엔으로 21.9% 정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 세출의 40% 정도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 자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지출금에 의존하고 있다.

지방의 주된 수입원인 지방세보다 더 많은 금액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고 있다는 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원 측면에서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와 세출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며, 이 차이를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지자체의 수익과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희박하게 하여 세출 증가를 억제하는 노력을 덜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정부 간의 자원 배분 방식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재정조정은 세원의 편재에 따른 ‘재정력 격차’, 각 지역의 지리적·사회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재정수요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관점에서 실시된다. 재정조정제도는 각국의 개별 사정에 따라,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교부재원을 조달하는

방법 및 조정대상으로 분류한다면, 수직적 조정과 수평적 조정을 하고 있는 나라, 재정력 격차를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수입 면을 고려하는 나라와 수요 면을 고려하는 나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본은 중앙정부의 수직적 조정에만 의존하는 재정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중앙에 의한 재정조정의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 중앙·지방 간의 세(稅)재원 배분(2022년도)



지방세입결산내역(2022)

지방세	지방양여세 <small>지방특례교부금 등 지방교부세</small>	국고지출금	지방채	기타
44조 522억엔 (36.1%)	21조 6,158억엔 (17.7%)	26조 6,657억엔 (21.9%)	8조 7,812억엔 (7.2%)	20조 8,303억엔 (17.1%)
지방세입 121조 9,412억엔				

주: 국고지출금에는 국유제공시설 등 소재 시장촌 조성 교부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통안전대책 특별교부금을 제외한다.

출처 일본 총무성 <https://www.soumu.go.jp/iken/11534.html> (검색일자: 2025. 3. 2.)

지방교부세는 지방공공단체 간의 자원 불균형을 조정하고, 국민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일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2000년 이후 일본의 정부 간 재원 배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2005년 고이즈미 정권때 실시한 ‘삼위일체’ 개혁을 들 수 있다. 삼위일체 개혁은 ‘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국세인 지방세의 일부를 개인주민세로 이양, 지방교부세 개혁, 국고보조부담금 개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방 자치단체는 주민세가 증가하면서 세수가 확대되는 한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부담금은 줄어들었다.¹⁾

삼위일체 개혁으로 2006년도의 세제개정으로 지방교부세율은 법인사업세 감세에 대한 대응으로 법인세의 법정률을 개정하였으며, 사회보장 4경비의 범위에 따른 사회보장급부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등을 감안하여 소비세의 법정률 등을 변경하였다.

가.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지방공공단체 간의 자원 불균형을 조정하고, 국민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일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교부세는 본래 지방 세수입으로 해야 하나, 단체 간 자원 불균형을 조정하고, 모든 지방단체에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한다는 견지에서, 국세로써 중앙정부가 징수하고, 일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재배분하는, 말하자면 ‘중앙정부가 대신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24년 현재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는 소득세·법인세의 33.1%, 주세의 50%, 소비세의 19.5%, 지방법인세 전액으로 구성된다.²⁾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두 종류가 있는데 지방교부세의 94%는 보통교부세이며, 특별교부세는 6% 정도이다.

보통교부세액은 아래의 식과 같이 정해진다.

- 지자체별 보통교부세액 =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 재원부족액
- 기준재정수요액 = 단위비용 (법정) × 측정단위 (국세조사인구) × 보정계수 (한랭지 보정 등)
- 기준재정수입액 = 표준적인 지방세수입 × 75/100 (원칙적으로) + 지방양여세 등

1) 총무성에 의하면, 삼위일체 개혁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2004-2006년 사이에 세원이양으로 약 3조엔, 국조보조부담금 개혁으로 약 4.7조엔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개혁으로 지방교부세는 약 5.1억엔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総務省, 「国から地方へと税源移譲」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pdf/060207_f.pdf, 검색일자: 2025. 3. 18.)

2) 2015년 이전에는 담배세의 일정 부분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나, 2015년 제외되었다. 지방교부세율의 변천에 대해서는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람

보통교부세액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요액이란, 각 지방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해당 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법」 제11조³⁾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금액이다.

기준재정수요액의 표준적인 수준의 구체적 근거가 되는 것은 지방재정계획에 제시된 세출의 내용과 수준이다. 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 및 국가경제 등과의 관련을 유지하면서, 지방재정과 관련한 기본적인 방침과 그 표준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은 이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비, 사회복지관계비, 공공사업비, 단독사업비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다.

표준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지방단체의 지출 실적(결산액)도 아니며 실제로 지출하려고 하는 금액(예산액)도 아니다. 실적이 아니라 표준적인 금액으로 산정하는 이유는, 지방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원 부족분을 공평하게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구체적인 실적을 그 재정수요 산정에 사용한다고 하면, 개별 사정이나 독자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산출한 금액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는 지자체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자치단체 개개의 구체적인 재정지출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적·지리적·사회적 조건에 대응하는 합리적이며 타당한 수준을 재정수요로 산정한다.

아울러,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일반재원으로서 재정수요액을 나타낸 것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는 목적세, 국고지출금, 사용자·수수료, 부담금·분담금 등의 특정 재원으로 충당하는 재정수요는 제외한다.

2) 단위비용

재정수요는 각 지방단체의 측정 단위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되는데, 이 측정 단위에 곱하는 단가를 단위비용이라고 한다. 「지방교부세법」 제2조 제6호에서는 단위비용은 ‘표준적 조건을 갖춘 지방단체가 합리적이며 타당한 수준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시설을 유지할 때 필요한 경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식과 같이 산정한다.

기준재정수요액은 이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비, 사회복지관계비, 공공사업비, 단독사업비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다.

3)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 단위 수치를 「지방교부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고, 이를 해당 측정 단위별로 단위비용을 곱하여 얻어진 금액을 해당 지방단체에 대해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재정수입액은
각 지방단체의
재정력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해당
지방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산정한
금액이다.

$$\begin{aligned} \text{단위비용} &= (\text{표준단체의 표준적 세출} - \text{국고보조금 등의 특정 자원}) / \text{표준단체의 측정 단위 수치} \\ &= \text{표준단체의 표준적인 일반재원 소요액} / \text{표준단체 측정 단위 수치} \end{aligned}$$

3) 보정계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는 모든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에 비목별로 동일한 단위비용이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의 측정 단위당 행정비용은 자연적·사회적 조건의 차이로 인해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런 행정비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그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유별로 측정 단위의 수치를 증가시키기도 감소시키기도 한다. 이것이 측정 단위 수치의 보정이며, 보정에 사용하는 곱하는 비율을 보정계수라고 한다.

4) 기준재정수입액

기준재정수입액은 각 지방단체의 재정력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해당 지방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법」 제14조⁴⁾ 규정에 의해 산정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적인 세수입의 일정 비율에 의해 산정되는 금액이다.

지방교부세제도가 표준적인 행정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도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에서는 ‘표준적인 일반재원으로서의 기준재정수입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그 산정 방법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 법률로 정하고 있다.

5) 지방교부세 산정 규칙(rule)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데 있어 적용되는 룰은 ‘절반의 룰’과 지방일반재정총액 ‘실질 동 수준 룰’의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절반 룰은 지방재정계획의 세출세입 차이(gap)에 대해, 교부세 법정률분 등을 충당해도 잔여(=절반대상 재원부족)가 발생하는 경우, 중앙과 지방이 반반을 보전하는 것으로 하고, 중앙분은 지방교부세의 특례가산, 지방분은 임시재정대책채로 부담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방일반재원총액 “실질 동 수준” 룰은 지방의 세출수준에 대해서는 중앙의 일반세출 형태와 기조에 맞추면서, 일반재원 총액(=지방세, 지방양여세, 지방교부세,

4) 일본의 「지방교부세법」 제14조의 내용은 매우 길고 방대하여 본고에서 그 전체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수록하지 않으나, 이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는 https://laws.e-gov.go.jp/law/325AC0000000211#Mp-At_14를 참조하기 바람

지방특례교부금 등, 임시재정대책채의 합계)에 대해 전년도 지방재정계획 수준보다 적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 룰은 2011년도에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적용·갱신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1’에 근거하여, 2024년도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예산편성과 지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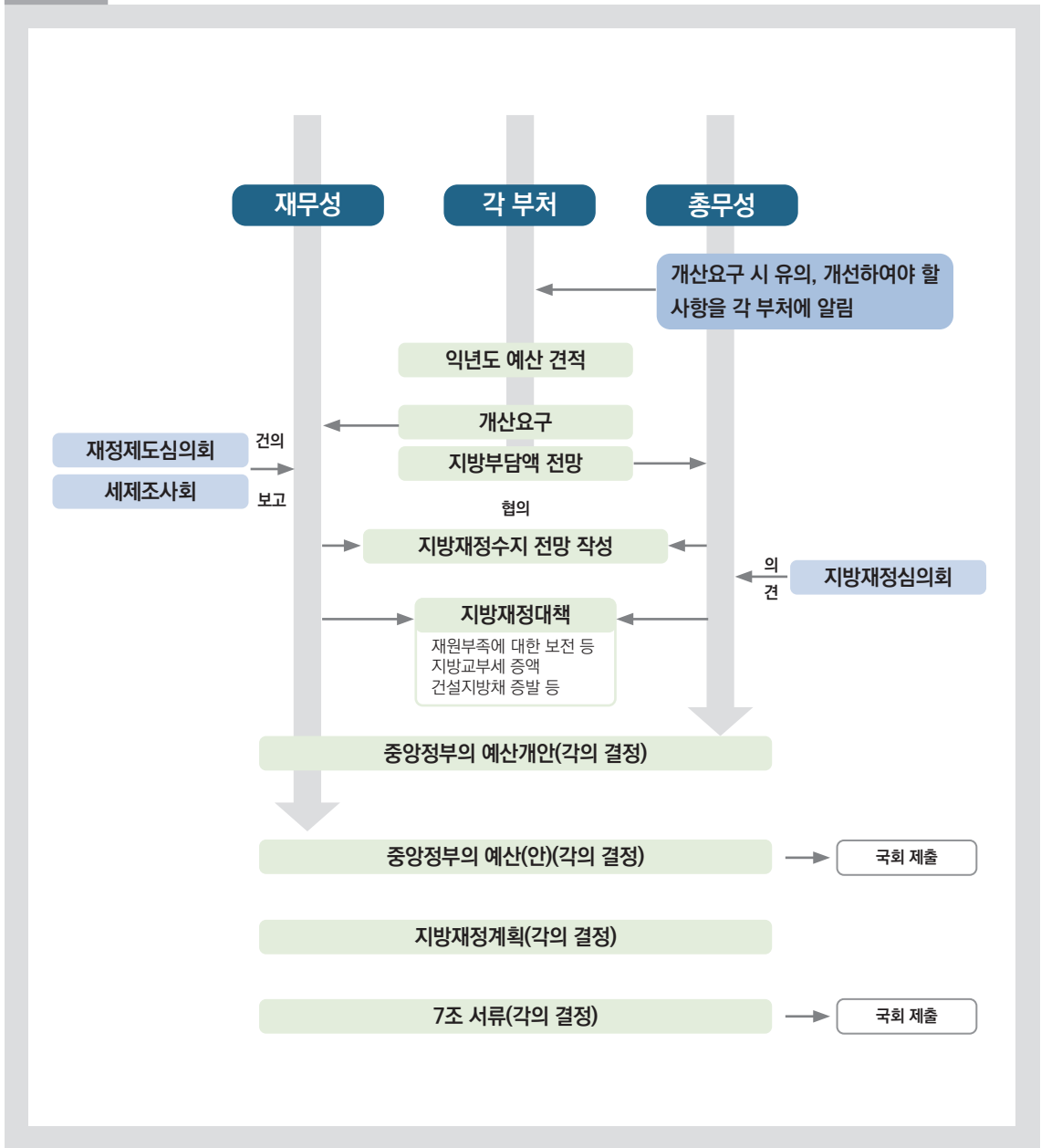
[그림 2]는 일본 정부의 예산편정 과정 및 지방대책 수립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각 부처는 다음해 예산 요구를 당해 연도 8월 말까지 재무성에 제출한다. 동시에 보조사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무성에 조서를 제출한다. 이상의 요청을 받아 재무성은 예산편성 작업을, 총무성은 지방재정계획 책정 작업을 시작한다. 총무성이 재무성과 교부세 규모를 논의할 때 요구의 근거자료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지방재정계획이다. 제3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지방재정계획은 각 자치단체별 표준적인 세입과 세출을 전국 단위로 합산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지방재정수지에 대해 전망하여 여기에 과부족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해소책을 강구하여 수지의 균형을 맞추는 자원 대책이 강구된다. 이 과정을 ‘지방재정대책’이라고 한다.

수지 균형을 위한 자원대책은, 각 연도의 지방재정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나, 주로 지방교부세율의 개정과 같은 제도 개정, 교부세 및 양여세 교부금 특별회계(교부세특별회계)의 자금운용부로부터의 차입에 의한 교부세 총액의 증액, 자원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건설지방채 증발 등의 방안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지방재정대책이 완료되면 중앙정부 예산안과 지방재정계획이 각의 결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 이를 승인하게 된다. 지방의 자원 부족에 대한 보전, 지방교부세, 건설지방채 등에 대한 내용이 결정되면 중앙정부는 예산안을 작성, 각의 결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중앙정부의 예산안과 같이 지방재정계획도 작성되어 각의 결정을 거치며, 「지방교부세법」 제7조에 제시된 세입·세출 총액 전망액 등에 관한 서류가 작성되며 각의 결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지방재정계획은
각 자치단체별
표준적인
세입과 세출을
전국 단위로
합산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지방재정수지에
대해 전망한다.

그림 2 예산편성 과정과 지방대책



출처 嶋津昭(1998), p. 62

3 지방재정계획

가. 지방재정계획의 정의 및 제정 경위

지방재정 가운데 지방공공단체의 일반회계와 공영사업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를 합한 것을 ‘보통회계’라 하며,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 대응한다. 내각은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과정과 함께 동시에 그 보통회계의 다음연도 세입세출 총액을 예측하여, 「지방교부세법」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다음연도의 지방단체의 세입세출 전망액」으로 결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것을 통상 ‘지방재정계획’(地方財政計畫)이라 한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대책을 통해 책정되나, 통상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이 종료된 후 약간의 시간을 두고 각의 결정되어 국회에 제출되고 일반에 공개된다. 지방재정계획은 ‘계획’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에 의해 작성된 다음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세출 총액 전망”이며, 「지방교부세법」 제7조에 의해 작성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는 것이다.

지방재정계획은 ‘계획’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에 의해 작성된 다음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세출 총액 전망”이다.

「지방교부세법」 제7조(세입세출총액 전망액의 제출 및 공표의 의무)

제7조. 내각은 매년도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익년도 지방단체의 세입세출총액 전망액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지방단체의 세입 총액 전망액 및 아래 각호에 열거하는 내역
 - 가. 각 세목별 과세표준액, 세율, 조정 전망액 및 징수 전망액
 - 나. 사용료 및 수수료
 - 다. 기채액
 - 마. 국고지출금
 - 바. 잡수입
2. 지방단체의 세출 총액 전망액 및 아래 각호에 열거하는 내역
 - 가. 세출 종류별 총액 및 전년도에 대한 증감액
 - 나. 국고지출금에 근거한 경비 총액
 - 다.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액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1947년에 처음 책정되었다. 지방이 무엇인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가 문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 요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부세의 총액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가 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의무교육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었는데, 교육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때 의무교육의 확대에 따른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계산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이 도입된 것이 최초의 사례이다.

1950년에 샤우프(Shoup) 권고⁵⁾가 작성되었는데, 이 샤우프 권고에 근거하여 창설된 지방재정 형평교부금제도에서는 지방의 재원부족액을 중앙정부가 형평교부금(衡平交付金)으로 보장하도록 하였다. 형평교부금 규모를 계산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지출액 총액을 개별 지자체별로 제출하게 하여 합산하고자 하였으나, 개별 지자체별로 필요 지출액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추계하는 교부세 분배 방식을 선택하였는데, 이때 사용된 수단이 지방재정계획이다. 즉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 요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부세의 총액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50년대 전반에는 이 지방재정계획에서 표준재정규모나 수입 산정방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1954년에 지방교부금제도가 발족하고, 국세의 일정 비율이 지방조정 보장재원으로서 교부되게 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과 중앙정부의 지방으로의 재원보전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졌다. 단, 지방교부세 제도하에서도 지방교부세의 매년도 총액이 지방단체의 재원부족액 총액과 현저하게 다를 경우에는 지방재정 또는 지방행정과 관련한 제도의 개정, 또는 지방교부세율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지방교부세법」 제6조의 3 제2항⁶⁾), 지방재정계획에는 여전히 그 중요한 근거로서의 역할이 남아있었다.

나. 지방재정계획의 책정과 역할

‘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에 맞춰서 정부 예산안의 발표 후에 총무성에 의해 작성·공표된다. 이 계획의 법적 근거는 「지방교부세법」이며, 직접적으로는 지방교부세 총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서 작성되는 것이며 ‘지방단체의

5) 샤우프사절단 일본세제보고서 (Report On Japanese Taxation By The Shoup Mission), 통상 샤우프 권고는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요청에 의해 1949년에 결정된 칼 샤우프(Carl Shoup)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세제사절단에 의한 일본세제에 관한 보고서이다. 1949년과 1959년의 2개의 보고서가 있으며 일본의 전후 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6) 제6조의3(특별교부세액의 변경 등) 매년도분으로 교부해야 할 보통교부세의 총액이 제10조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해 각 지방단체에 대해 산정한 금액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액은 당해 연도의 특별교부세의 총액에 가산하도록 한다. 매년도분으로 교부해야 할 보통교부세의 총액이 계속하여 제10조 제2항 본문 규정에 따라 각 지방단체에 대해 산정한 금액의 합산액과 현저하게 다를 경우에는, 지방재정 또는 지방행정에 관한 제도의 개정 또는 제6조 1항에서 정한 율(率)의 변경을 행하도록 한다.

표준적인 세입·세출 총액의 전망액'이다.⁷⁾

1) 책정

지방재정계획의 책정은 중앙정부의 경제에 대한 전망 등을 참고로 하면서, 중앙정부의 예산편성과 동시에, 세제개정 동향, 특히 지방교부세를 둘러싼 조치, 중앙정부의 각종 예산편성이나 신규 시책의 상황, 지방 단독사업의 규모, 국고보조부담률의 변경 등을 감안하여 총무성과 재무성의 협의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각의 결정을 거쳐 통상 2월에 국회에 제출된다.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계획은 지방공공단체의 해당연도의 실제 수입 및 지출의 요구액을 합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추측되는 통상 수준의 경비와 수입, 즉 “표준적인 세입과 세출 총액”을 합산한 것이다. 표준적인 재정지출, 수입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초과과세분이나 법정외 보통세수분은 지방재정계획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가공무원의 급여 수준을 초과하는 급여비,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소위 초과부담도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적이지 않은 채권(퇴직수당채 등)도 지방재정계획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지방재정계획이 반드시 현실의 세입·세출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재정계획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합산하게 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당초 예산에 맞추어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재정계획은 지방공공단체의 단년도 수지를 나타낸 것으로, 단년도의 수지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전년도의 이월사업비, 잉여금 적립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령으로 정하는 경비부담 구분에 의거하여 여타의 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이전되는 이월금은 지방재정계획에 계상된다.

지방의 표준적 세수와 지출을 제시하여 교부세 산정의 근거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은 정의상 지방이 필요로 하는, 즉 각 지자체의 요구를 합산한 것으로 이해되기 쉬우나,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 요구를 합산한 것이 아니라 표준적인 세출과 세입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에는 초과과세와 법정외과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방교부세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법정외과세 혹은 초과과세로 수행해야 한다.

지방재정계획대로 집행이 되었는데에 관한 관리 감독은 총무성이 결산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의 지출이나 개별 항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감독이나 권고를 하지는 않는다. 지방재정계획은 1년을 단위로 매년 새롭게 작성되는

지방재정계획은 정의상 지방이 필요로 하는, 즉 각 지자체의 요구를 합산한 것으로 이해되기 쉬우나,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 요구를 합산한 것이 아니라 표준적인 세출과 세입을 나타낸 것이다.

7) 지방재정계획의 구체적인 형태는 [부록 2]를 참조하기 바람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 요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세입과 세출을 계산하여 부족분을 산출하여, 교부세의 총액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활용된다는 것이다.

것으로, 3년이나 5년을 단위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나, 수시로 변동하는 경기와 세수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작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은 국회 의결 사항이나, 지방재정계획은 국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며, 각료회의에서 보고하면 된다.

2) 역할

지방재정계획을 책정하는 의의로는 일정 규칙에 따라 지방재정 전체의 수지 전망액이 명확히 제시됨에 따라 지방세 및 재정 제도의 개정, 지방교부세율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중앙정부의 경제 운영, 예산·세제 개정, 각종 장기 계획 등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지방재정 시책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지방단체에 표준적인 지방재정이 갖추어야 할 모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지방재정계획이 제공하는 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계획에서는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구별 없이 전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하여 보통회계의 당초 예산에 대해 단년도 베이스로 표준 세입·세출액을 산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을 도도부현과 시정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합한 형태로 제시되므로, 도도부현 지출금과 같은 도도부현과 시정촌 간의 재정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 요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세입과 세출을 계산하여 부족분을 산출하여, 교부세의 총액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활용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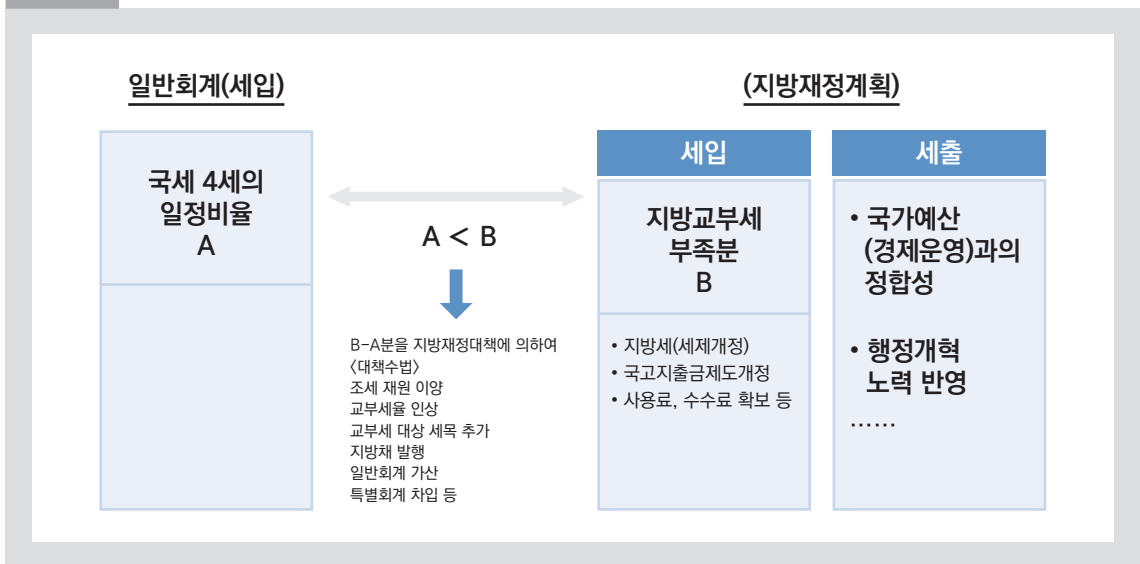
이러한 지방재정계획의 역할로는 첫째,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 등과의 정합성 확보, 둘째, 지방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재원을 보장, 셋째, 지방단체의 매년도 재정운영의 지침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매년도 예산편성을 받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시책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지방재정과의 조정을 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정부예산과 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계획의 책정 과정에서 다음연도의 지방재정수지를 예상하고,

「지방교부세법」 제6조⁸⁾에 규정된 교부세 총액으로 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그림 3). 즉, 수지 부족이 예상될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지방재정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일반회계에서 국세 4세(소득세, 주세, 법인세, 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부세로 배분하게 되는데, 이때 배분된 지방교부세가 지방의 세입과 세출을 고려할 때 그 부족분을 지방재정대책으로 보완하는 것이다.⁹⁾

그림 3 정부예산과 지방재정계획(1)



출처 総務省(2009), 「国と地方との行政事務の分担について」, 総務省内部資料, p. 6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지방교부세의 총액 결정의 기제(mechanism)를 정부예산과 지방재정계획과의 관계를 2024년의 예를 들어 살펴본 것이 [그림 4]이다. 그림에서 왼쪽 2개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가운데 2개는 중앙정부의 교부세특별회계, 오른쪽 2개는 지방재정계획이다.

8) 제 6조 소득세 및 법인세 수입액의 각각 백분의 33.1, 주세 수입액의 백분의 50, 소비세 수입액의 백분의 19.5 및 지방법인세 수입액으로 교부세로 한다.

매 연도분으로 교부해야 할 교부세 총액은, 당해연도의 소득세 및 법인세 수입전망액의 각각 백분의 33.1, 주세 수입전망액의 백분의 50, 소비세 수입 전망액의 백분의 19.5 및 지방법인세의 수입전망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에 당해연도의 전년도 이전 연도에서의 교부세로, 아직 교부되지 않은 교부세액을 가산하고, 또는 당해 전년도 이전 연도에 교부해야 했던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한 금액 상당분을 합산액에서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9) [그림 3]에서 재원이 남는 경우, 즉 A>B인 경우는 버블 경기 시기 등 극히 제한적인 시기에 나타났다.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의 세출을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출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후일 불필요한 세출을 증대시켰다는 비난이 많았다.(神野·小西, 2014, p. 86)

교부세특별회계에는 일반회계의 세입인 국세수입 가운데 법정률분이, 일반회계의 세출에는 지방교부세 교부금으로 계상되어 산입된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의 세출에서는 국세 4세의 법정률분 16.3조엔 외에, 기왕(既往)법정가산 0.3조엔, 지방 특례교부금 등의 1.1조엔의 가산조치가 반영되어 있다. 이 외에도 중앙정부의 제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수요의 추가나 자원 부족에 대하여, 지방재정의 일반재원 보전을 위해 마련된 지방특례교부금이 지방교부세에 준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교부세특별회계의 세입인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일반회계로부터 교부세특별회계로 산입되는 것과 달리, 지방양여세는 일반회계를 경유하지 않고 국세수납금 정리자금으로부터 산입되는데, 이를 교부세 특별회계로부터의 직접 산입이라고 한다. 지방법인세, 특별회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이 이에 해당한다.

교부세특별회계의 세출 재원으로서의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이월금에 더하여, 전년도부터의 이월금이나 잉여금, 또는 착오 등으로 반환되는 자금에 더하여 교부세특별회계 차입금의 해당 연도 원리금 상환분을 차감한 금액 18.7조엔이다. 이 세출 측면에서의 지방교부세 18.7조엔이 지방재정계획의 세입에서 계산된 지방교부세 18.7조엔과 일치한다.

[그림4]에서는 교부세특별회계로부터 지방재정계획으로 이월되는 것처럼 보이나, 지방재정계획은 회계가 아니므로, 지방재정계획으로 이월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재정계획은 당해연도의 지방교부세 소요액의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특별회계로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지방재정계획에서는 세입과 세출이 일치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계획의 수지를 일치시키는 조정 항목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지방교부세의 자원 부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임시 재정대책으로 보전하고 있다.

지방재정계획에서는 세입과 세출이 일치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계획의 수지를 일치시키는 조정 항목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4 요약 및 시사점

국민들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많은 사회적·문화적·경제적 배경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많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며, 이 비용을 법률이 정하고 있는 지자체의 수입만으로는 충분히 마련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일본이나 한국 모두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계획의
기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 표준적인
재정 수입
및 지출액을
전망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교부세의
총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필요로 하는 일정한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만으로는 그 지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의 수입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 각 지방에 배분하고 있는데, 그 배분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일본에서는 중앙정부가 모든 지방공공단체에서 법정 의무지출 사업 등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보장할 목적으로, 매년 내각에 의해 다음해의 지방공공단체의 표준적인 행정수준과 관련된 세입세출총액 전망액에 관한 서류-지방재정계획이 책정되고 있다.

총무성은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작업과 병행하여 지방재정계획 책정 작업을 진행하여, 익년도의 지방재정 전체 수지를 산정하고, 필요로 하는 재원과의 과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메우기 위한 재원대책을 실시한다. 이 재원대책이 지방재정대책이며, 중앙정부의 개산(概算)결정에 앞서 총무성과 재무성이 여러 번의 절충을 거쳐 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채의 증발이나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로부터 가산 등의 재정조치가 강구되며, 이러한 지방재정계획 책정을 통해 지방재정 전체로서 표준적인 행정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을 보장하는 구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에 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시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치단체에서 수립하고, 지방의회 보고, 행정안전부의 종합계획 작성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된다. 일본의 지방재정계획과 가장 큰 차이점은 단년도가 아니라 5년에 대한 계획이라는 점이다. 단, 5년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나 매년 수정·보완을 하는 연동화(rolling plan)를 운영하고 있다. 투융자, 지방채 발행의 사전 기준으로 제시되며, 계획 작성만이 법적 의무 사항이며 준수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점은, 지방교부세가 2010년 약 28조원에서 2020년은 50.3조원, 2023년은 75.3조원으로, 내국세 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지방교부세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집행되는 것이므로 증가하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사회보장의 필요성이 증대하면 사업을 담당하는 지방정부는 사회보장과 관련한 재원을 더욱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는 필요한 사회보장을 유지하면서 지출이 확대되는 것을 억제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지방재정계획의 기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 표준적인 재정 수입 및 지출액을 전망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교부세의 총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 총액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수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많은 지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편성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 내에 통일된 형태로 일관적인 재정 과부족을 파악하여 지방교부세 총액을 결정하는 논의의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재정계획'과 같은 형태의 수단도 정부 간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 이창균, 『외국의 지방재정제도: 일본의 삼위일체개혁과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4.
- 金炫樹, 「韓日間の地方交付税 制度の比較研究」, V.R.F. Series No. 456, 日本貿易振興機構 アジア経済研究所, 2010.
- 佐藤主光, 『地方税 改革の経済学』, 日本経済新聞社, 2011.
- 嶋津昭 編, 『図説 地方財政 平成10年度版』, 東洋経済新聞社, 1998.
- 神野直彦·小西砂千夫, 『日本の地方財政』, 有斐閣, 2014.
- 財務省, 『地方財政(参考資料)』, 2023.
(https://www.mof.go.jp/about_mof/councils/fiscal_system_council/sub-of_fiscal_system/proceedings/material/zaiseia20231004/02.pdf)
- 財務省, 『図説 日本の財政』, 2009, 2018, 2023.
- 財務省, 『地方財営(参考資料)』 (검색일자: 2025. 3. 2.)
- 総務省, 地方財政制度(<https://www.soumu.go.jp/iken/11534.html>) (검색일자: 2025. 3. 2.)
- 総務省, 「国から地方へと税源移譲」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pdf/060207_f.pdf (검색일자: 2025. 3. 18.)
- 総務省, 「国と地方との行政事務の分担について」, 総務省内部資料, 2009.

부록

부록 1 지방교부세 재원 추이

(단위: 조엔)

개정연도	소득세	법인세	주세	소비세	담배세	지방법인세	법정률 개정이유
1954	19.87	19.87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 재원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인상
1955		22					
1956		25					
1957		26					
1958		27.5					
1959		28.5					
1960		28.5+0.3*					
1962		28.9					
1965		2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8년도 세제 개혁(소비세 도입 등) 법정3세의 감세에 따른 교부세 감소 등에 대한 대응으로서 소비세를 대상세목화 국고보조부담률의 항구화 국고보조부담률의 항구화(경상경비)에 대한 대응으로서 담배세를 대상세목화 2004년도 세제개혁(지방소비세 도입, 소비세율 인상) 소득세 감세에 따른 교부세 감소 등에 대한 대응으로 소비세법정률을 인상 1999년도 세제개정(한국적 감세) 「법인사업체의 감세에 대한 대응으로 법인세의 법정률을 인상 2006년도의 세제개정 항구화된 법인사업세 감세에 대한 대응으로 법인세의 법정률 변경 사회보장세제일체개혁(소비세율 인상 등) 사회보장 4경비 범위에 따른 사회보장급부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등을 감안하여 소비세의 법정률을 변경 2014년도 세제개정 지역간 세원 편재성을 시정하기 위한 지방법인세를 도입 교부세 원자(原資)의 안정성 향상 및 중실을 도모하기 위한 법정률 개정 소비세율 10% 인상에 따른 소비세와 관련한 법정률 개정
1966		32					
1989				24	25		
1997				29.5			
1999		32.5					
2000		35.8					
2007		34					
2014				22.3		全額	
2015	33.1	33.1	50		除外		
2018				20.8			
2019				19.5			
2020							
2024							

주 0.3조엔은 임시지방특별교부금

부록

부록 2 2025년도 지방재정계획 전망 개요(통상수지분)

項目	令和7年度(見込)	令和6年度	増減率(見込)	
歳入	地方税	454,493 億円	427,329 億円	6.4 %
	地方譲与税	29,661 億円	27,293 億円	8.7 %
	地方特例交付金等	1,936 億円	11,320 億円	▲82.9 %
	地方交付税債	189,574 億円	186,671 億円	1.6 %
	うち臨時財政対策債	59,602 億円	63,103 億円	▲5.5 %
	復旧・復興事業	0 億円	4,544 億円	皆減
	一般財源充当分	▲33 億円	▲8 億円	312.5 %
	全国防災事業	▲217 億円	▲169 億円	28.4 %
	一般財源充当分			
	歳入合計	約 970,100 億円	936,388 億円	約 3.6 %
「一般財源」	675,414 億円	656,980 億円	2.8 %	
(交付団体ベース)	637,714 億円	627,180 億円	1.7 %	

項目	令和7年度(見込)	令和6年度	増減率(見込)	
歳入	給与関係経費	約 209,800 億円	202,292 億円	約 3.7 %
	退職手当以外	約 198,600 億円	191,527 億円	約 3.7 %
	退職手当	約 11,200 億円	10,765 億円	約 4.0 %
	一般行政経	約 456,000 億円	436,893 億円	約 4.4 %
	補助分	約 265,800 億円	251,417 億円	約 5.7 %
	単独分	約 158,900 億円	153,861 億円	約 3.3 %
	うちデジタル活用推進事業費(仮称)	1,000 億円	- 億円	皆増
	国民健康保険・後期高齢者医療制度関係事業費	約 15,000 億円	14,915 億円	約 0.6 %
	新しい地方経済・生活環境創生事業費(仮称)	12,000 億円	12,500 億円	▲4.0 %
	うち地方創生推進費	10,000 億円	10,000 億円	0.0 %
	うち地域デジタル社会推進費	2,000 億円	2,500 億円	▲20.0 %
	地域社会再生事業費	4,200 億円	4,200 億円	0.0 %
	公債償還補修費	約 107,300 億円	108,961 億円	約 ▲1.5 %
	うち緊急浚渫推進事業費	約 15,500 億円	15,344 億円	約 1.0 %
	投資的補助	1,100 億円	1,100 億円	0.0 %
	単轄・補助分	約 121,100 億円	119,896 億円	約 1.0 %
	うち緊急防災・減災事業費	約 63,600 億円	63,637 億円	約 0.0 %
	うち公共施設等適正管理推進事業費	5,000 億円	5,000 億円	0.0 %
	うち緊急自然災害防止対策事業費	5,000 億円	4,800 億円	4.2 %
	うち脱炭素化推進事業費	4,000 億円	4,000 億円	0.0 %
	公営企業繰出金	1,000 億円	1,000 億円	0.0 %
	うち企業債償還費普通会計負担分	約 22,800 億円	23,202 億円	約 ▲1.7 %
	うち企業債償還費普通会計負担分	約 12,400 億円	13,059 億円	約 ▲5.0 %
	水準超経費	37,700 億円	29,800 億円	26.5 %
	歳入合計	約 970,100 億円	936,388 億円	約 3.6 %
	(交付団体ベース)	約 932,400 億円	906,588 億円	約 2.8 %
	地方一般歳出	約 812,800 億円	784,568 億円	約 3.6 %

출처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984942.pdf (검색일자: 2025. 3. 11.)

정책연구



연금과세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오종현·권성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상거래 관련 관세제도 연구

정재호·김한성

종합부동산세의 경제적 효과 및 향후 정책 방안

송경호

파레토 효율성 측면에서의 조세-이전 체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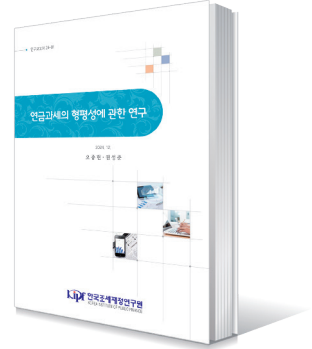
최인혁·문지웅

조세 및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분석

고지현·고창수

연금과세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오종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권성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1. 연구 목적

급속한 고령화와 평균 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은퇴 이후의 소득 확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연금제도가 있다.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그리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있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의무가입 연금이고 개인연금은 임의가입 연금이다.

우리나라에 다양한 연금제도가 있는 만큼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금과세제도도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리고 연금제도마다 상이한 과세방식이 적용되면서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연금소득확보를위한기여-운용-수급단계에서 각각 면세(Exempt)- 면세(Exempt)-과세(Taxed)하는 EET 과세방식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수급단계에서 종합과세하지만 퇴직연금은 퇴직소득과세로 분류과세하거나 저율과세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과세방식이 혼재되어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은 운용단계에서는 비과세하지만 기여와 수급단계에서는 각각 세액공제와 저율 분리과세 등을 통해 부분과세(Partially 't'axed)하는 tEt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연금보험은 기여 단계에서는 종합과세하지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운용단계와 수급단계에서는 비과세한다.

이처럼 연금제도 간 과세방식의 차이는 연금제도를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성에 문제를 발생시켜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연금 선택에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연금과세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연금과세제도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식별하여 제도 개선 방안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현행 연금과세 체계**

구분	과세 유형	과세제도	
		기여단계	수급단계
공적 연금	EET	직장가입자 사용자 납입분 • 근로자: 비과세 • 사용자: 손금산입 본인 납입분: 소득공제	<연금수령> 종합소득과세(6~45%) <연금외수령> 퇴직소득과세(6~45%)
퇴직 연금	EET	사용자 납입분 • 근로자: 비과세 • 사용자: 손금산입	퇴직소득 이연금
			<연금수령> 퇴직소득과세(6~45%) 세액감면: 수령연차 10년 • 이하: 30% • 초과: 40% <연금외수령> 퇴직소득과세(6~45%)
			운용수익 아래 IRP tEt 방식과 동일
IRP 연금 저축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tEt	세액공제 • 공제 납입액 한도: 연금저축 연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연 900만원(공제 납입액 한도 초과해도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세액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총급여액 5,500만원 - 이하: 15% - 초과: 12%	<연금수령> 분리과세와 종합소득과세 중 선택 • 분리과세: 연간 지급액 1,500만원 - 이하: 저율과세(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 초과: 15% • 종합소득과세(6~45%)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세 분리과세(15%)
	연금계좌세액공제 미적용		
	TEE	종합소득과세(6~45%)	<연금수령> 비과세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세 분리과세(15%)
연금 보험	TEE	종합소득과세(6~45%)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이자소득과세(14%)

주 연금수령 시 운용단계는 모두 비과세

출처 기획재정부(2023), 『조세개요 2023』, pp. 62-6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연금과세제도의 형평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기존의 연금과세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활성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특정 연금과세제도의 합리화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왔다. 반면, 다양한 연금제도 간

과세형평성에 대한 논의는 그간 활발하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진수·김재진(2007), 김수성(2010), 문성훈·김수성(2014), 강성호 외(2017), 임성중(2017), 정원석·이선주(2017), 전병목·김도형(2022), 김갑래·황세운(2024) 등은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연금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한도를 인상하는 등의 기여단계의 세제혜택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병욱 외(2010), 김진수(2012), 김광윤·이영환(2013),

문성훈·김수성(2014), 임성중(2017) 등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한도를 상향하거나 연금소득공제액을 인상하는 등의 수급 단계의 세제혜택을 제안하였다. 김진수·배준호(2006), 김수성(2010), 김진수(2012), 강성호 외(2017), 김갑래·황세운(2024) 등은 퇴직연금 등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시금 수령 시 세부담을 높이거나 연금 수급 시 세부담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김원식 외(2016)는 사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김원식 외(2016), 강성호 외(2017, 2018), 이상엽·윤성주(2018), 정원석 외(2023), 김갑래·황세운(2024) 등은 기여단계에서 보조금 또는 환급형 세액공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이나 영세사업주, 여성의 연금 가입과 기여를 유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연금과세제도에 따른 세부담을 비교하기 위해 가상의 생애소득 궤적과 연금제도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한다. 생애소득 궤적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정한다. 시뮬레이션 분석은 다양한 환경, 연금제도 간 차이 등을 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수행한다. 소득은 25세부터 64세까지 40년간 발생하고, 소득의 일부는 기여금으로 납입하여 적립한다고 가정한다.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만 존재하며, 기여금은 근로소득의 9%로 설정한다. 적립금의 운용수익률은 3%로

가정하고, 운용수익을 과세할 경우 이자소득세율인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다. 연금은 65세부터 84세까지 20년간 지급받으며, 연금 수급기간 동안에는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또한 모든 연금제도의 연금액은 20년간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급한다고 가정한다. 추가로 부양가족은 없다고 가정하며, 모든 세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분석에서 생애 세부담, 세제혜택 등을 현재가치(25세 시점)로 환산하여 비교하는데, 이때 할인율은 운용수익률과 동일한 3%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하에 현행 연금과세제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상적인 연금과세제도들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여 과세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한다.

4. 주요 결과 및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의 연금과세 방식을 살펴보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임의가입하는 개인연금에는 EET 방식의 과세체계가 없다. 둘째, 퇴직연금의 수급 단계에 적용되는 과세방식이 매우 복잡하다. 셋째, 퇴직연금의 퇴직소득 이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부담이 크게 낮아져 다른 연금제도와의 과세형평성이 악화된다.

이러한 우리나라 연금과세제도의 특징에 기반하여 연금과세제도 간 과세형평성 제고는 개인연금 과세제도의 다양화와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단순화, 그리고 퇴직소득세 강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EET 방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저축까지 고려하면 임의가입하는 개인연금의 과세방식이 EET, tEt, TEE 방식으로 다양화되고, 개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후생수준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현재 기업이 납입하는 퇴직연금은 이미 EET 방식으로 과세되고 있으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될 경우 퇴직연금 전체의 과세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포함한 퇴직연금 전체를 EET 방식으로 과세한다면 수급단계의 과세방식도 일치시켜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통일된 과세방식은 공적연금과 같이 종합소득과세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을 수급단계에서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면 퇴직소득이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이 매우 약해질 수 있다. 종합소득세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EET 방식으로 과세하더라도 수급단계에서 무조건 종합소득과세를 적용하기보다는 현재의 연금저축과 같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세부담이 낮은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더라도 현행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이 낮아 퇴직소득 이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퇴직소득세를 강화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어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기여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연금저축의

수급단계 과세는 현행 제도와 유사한 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여단계의 세액공제율과 수급단계의 분리과세 표준세율을 동일하게 설정한다면 기여단계에 납부하지 않은 만큼의 소득세를 수급단계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이연이라는 제도적 취지에도 부합한다. 한편 연금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은 납세의 편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활성화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맥락에서 저율과세나 표준세율과세가 종합소득과세보다 세부담이 크면 종합소득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개인연금을 tEt 방식으로 과세할 때 기여단계에서 세액공제를 하는데, 이때 세액공제율을 단일공제율로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은 12%이다. 그리고 수급단계에서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이때 세율은 15%이다. 이는 기여단계에서 제공된 세제혜택보다 수급단계에서 더 많은 세부담이 발생하는 구조로 연금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물론 개인이 이러한 세부담을 예상하여 기여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단계에서 비과세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납세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에 미래의 소득수준이나 과세구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울뿐더러 이러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세액공제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현재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각각 5,500만원이나 4,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세액공제율은 분리과세 세율과 동일한 15%인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세액공제율을 15%로 통일한다면 기여와 수급단계의 과세 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공적연금의 기여단계에서 근로자 납입분의 면세 방법으로 소득공제가 아닌 비과세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공제제도 중 총급여액에 영향을 받는 제도들이 있다. 이로 인해 EET 방식에서 기여단계의 면세를 비과세 방식으로 적용하느냐, 아니면 소득공제 방식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실제 세부담이 달라진다. EET 방식은 현재의 소득을 미래에 실현하면서 세부담도 미래로 이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보험료가 현재의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EET 방식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 하지만 총급여액이 소득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비과세 방식은 제한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의무가입이고 개인이 연금보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공적연금에 한해,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한 연금보험료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표 2 중장기적인 연금과세 방향 예시

구분	과세 유형	과세제도	
		기여단계	수급단계
공적 연금	EET	직장가입자 사용자 납입분 • 근로자: 비과세 • 사용자: 손금산입 본인 납입분: 비과세(소득공제)	〈연금수령〉 종합소득과세 〈연금외수령〉 강화된 퇴직소득과세
퇴직 연금 RP	EET	• 사용자 납입분 - 근로자: 비과세 - 사용자: 손금산입 • 본인 납입분: 소득공제 - 연간 IRP 소득공제 한도 설정	〈연금수령〉 분리과세와 종합소득과세 중 선택 • 분리과세: 연간 일정 수령액 - 이하: 저율과세 - 초과: 표준세율과세 • 종합소득과세
연금 저축	tEt	• 본인 납입분: 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 공제 납입액 한도 설정 - 단일 세액공제율	〈연금외수령〉 • 퇴직소득 이연금 부분: 강화된 퇴직소득과세 • 그 외 부분: 기타소득세 분리과세
IRP 연금 저축	TEE	〈IRP 소득공제 미적용 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미적용 납입액〉 종합소득과세	〈연금수령〉 비과세 〈연금외수령〉 운용수익에 대해 분리과세
연금 보험	TEE	종합소득과세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이자소득과세

주 연금수령 시 운용단계는 모두 비과세

출처 저자 작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상거래 관련 관세제도 연구



정재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한성 |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전자상거래인 해외직구에 초점을 맞춰, 해외직구가 기존의 기업형 무역과 달리 새로운 무역형태로 자리 잡은 현 상황 속에서 기존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해외직구에 적용함에 따른 문제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정책 변화, 그리고 해외직구 과세제도와 관련된 고려 사항들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역내 거대 통상협정 등장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해외직구와 연관성이 높은 국제물류센터(Global Distribution Center, GDC)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이 해외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빠르게 확산되고 해외직구가 소액 개인무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으로 등장하면서 국제무역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해외직구가 급증한 이유로는 과세 면제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국내 제품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해외직구가 저렴한 이유 중에는 약 절반 정도가 부가가치

세 및 관세 면제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수입품과 달리 해외직구 물품에 부가가치세 및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자가사용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해외직구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국제운송비용이 비싸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소액물품은 친지 선물, 혹은 해외여행 물품 등에 한정되었던 당시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래서 친지 선물, 혹은 해외여행 물품 등에 과세하는 것이 정책 목적상 그리고 세수 측면에서 실익이 크지 않고 행정비용만 발생한다는 인식에 기본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적용된 제도였다. 하지만 소액면세제도가 시작된 당시의 취지와 지금의 해외직구와는 큰 차이가 있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제도를 여전히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과세 면제제도는 국내 사업자와 외국 공급자 간의 불균등한 시장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내 판매자가 국내 생산품 혹은 수입품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국내

판매자가 판매하는 수입품은 관세도 이미 포함된 금액이다. 하지만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해외 공급자가 국내 판매자보다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하다. 반대로 국내 판매자는 불공평한 시장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해외 공급자와 국내 사업자의 가격 경쟁력 격차가 품질, 생산성 향상, 유통구조 개선 등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면세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 회복을 위해 해외직구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해외직구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OECD, WCO 등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EU, 중국 등에서는 해외직구에 과세하고 있다. 호주는 국내 사업자와 외국 공급자 간의 불균등한 시장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 Tax; GST) 과세를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여러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GST 징수 실적이 예상을 넘었고 다수의 해외 공급자도 자발적으로 등록하였다. 이 결과는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과 호주 국경보호청(Australian Border Force)의 공조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또한 호주 정부의 간소화된 제도 설계, 중국 등 소규모 해외 공급자에 대한 특화된 제도 안내 등의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되어 우리 과세당국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이처럼 소액물품에 과세가 가능해진 것은 모든 자료가 소액이든 거액이든 금액과 상관없이, 디지털로 세관에 전송 가능하기에 과세에 따른 행정비용이 이전보다 작아졌다는 것이다. 디지털화된

통관환경으로 호주에서 보았듯이, 납세협력도 높고, 세수도 예상보다 많으면서 비용 대비 합리적인 제도로 운용할 수 있다.

EU도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한 국내 사업자와 외국 공급자 간의 불공평한 경쟁 관계뿐만 아니라 2016년 연구에서는 소액면세제도로 인해 해외직구의 약 65%가 저가 신고를 하는 것으로 추산하여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EU는 추가로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 면세제도도 2028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사항이다. 관세 면세제도로 인해 저가신고 및 분할신고 등을 통한 과세 회피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상황에서 관세 부과로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소액면세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EU에서는 관세 부과를 위해 간소화된 간이세율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간이세율제도는 우리도 현재 운영하는 제도로서, 해외직구에 적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도 관세에 적용되는 소액면세 한도를 철폐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직구 물품 중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개인에게 수입요건 확인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관세를 부과해서 요건확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소비자 안전을 위해 규제 무력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수입물품의 요건확인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요건확인 비용이 발생하는 일반수입에서 요건확인이

면제되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해외직구로 전환되면서 규제가 무력화되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 사업자들도 과세면제 및 요건확인 면제를 통한 가격 경쟁력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 일 반수입이 아닌 해외직구를 활용하기도 한다. 현재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이 해외직구로 많이 반입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여 요건확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국내 사업자와의 공정한 시장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반면 해외직구 악용 가능성, 기본관세율과 FTA 협정세율 등을 고려해서 간이세율이 0%인 품목군을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GDC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자무역체제를 이끌었던 WTO의 협상력 부재와 주요 기능 상실, 그리고 대표적 무역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기존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개도국들이 역내 다자간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면서 신통상규범을 확립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역내 거대 통상협정에서는 기존 협정에서 볼 수 없었던 역내 누적 원산지를 인정하면서 역내 회원국 간의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전통적인 무역과 달리 수입국 소비자와 해외 판매자가 직접 거래하는 해외직구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물류시스템을 통한 배송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물류시스템과 역내 거대 통상협정의 누적 원산지증명을 활용하여 GDC를 이용한 교역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역내 GDC를 활용하는

방식은 국경 간 해외직구 거래의 운송비용 및 시간 단축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경 간 B2C 거래 방식에 적합한 방안으로 꼽힌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상품 공동보관, 재고 관리, 포장, 배송 등 물류 전 과정을 통합 수행하고 있다. 국내 물류업체들도 해외직구의 운송비용 절감 및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홍콩, 싱가포르, 사우디 등에 GDC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

국내 GDC에서는 과세 문제로 인해 국내 반입은 허용되지 않고 수출만 가능해서 국제적으로 운용되는 방식으로 GDC 운영은 어려운 상황이다.


GDC의 국내 활용 방안은 국내 소비자 입장과 함께 국내 사업자 입장, 국제적 추세 등을 고려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GDC를 통해 해외직구를 받게 되면, 운송비 절감에 따른 가격 인하, 배송 시간 단축 등의 효용 증가가 발생한다. 해외직구 물품이 주문 후 개별 운송되는 것이 아니라 주문에 앞서 사전에 대량으로 GDC에 반입되어 주문 후 국내로 배송되기 때문에 배송 비용 및 시간이 단축된다. 그러나 국내 사업자, 판매자 그리고 일반 수입업자 입장에서 GDC에서 B2C 거래를 허용하면 더욱더 불공정한 시장경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물류산업 입장에서, GDC에 반입된 수입 화물은 운송, 하역, 창고 보관, 포장, 재고관리 등의 작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국내 배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이 발생하여 물류산업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및 사업자 입장과 함께, GDC의 역할은 RCEP의 연결 원산지증명

등을 포함하여 더 큰 범위에서 논의하여 GDC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RCEP의 연결 원산지증명 등을 활용할 경우, 양자간 FTA와 달리 폭넓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출(해외역직구)하려는 국내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GDC 운용의 중요한 걸림돌은 과세 문제이다.

따라서 GDC는 RCEP의 연결 원산지증명제도 등을 통한 폭넓은 특혜관세 혜택을 활용하여, 국내 생산 증가, 물류 처리, 항공 배송 등을 통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외직구에 과세하여 GDC를 제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외제품이 국내로 수입되면서 국내 생산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해외직구 제품도 역시 국내 생산품과 일반 수입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상호 경쟁은 국내 사업자의 품질 개선,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유도해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그 상호 경쟁에서 국내 사업자와 해외 공급자 간의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제공하는 과세 면제와 요건확인 비용 면제를 시정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환경을 제공하고, 그 이상의 차이는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면, 국내 생산자와 판매자도 생산성 및 유통 구조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시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제적 효과 및 향후 정책 방안

송경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의 세 가지 주요 목적(조세 부담의 형평성, 부동산 가격 안정, 지방재정 균형 발전)을 중심으로 제도의 효과성과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소득 대비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역진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이 과도한 계층은 주로 은퇴한 고령층으로 확인되었으며, 재산세의 경우 고령층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5% 또는 10%를 초과하는 계층을 분석한 결과, 이들 그룹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계층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고액 자산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추가적으로, 거주 중인 자가에서 발생하는 귀속임대료를 소득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귀속임대료를 합산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역진성은 크게

완화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역진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자산 가격 대비 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저가 주택 구간에서 고가 주택 구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이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역진성은 주택의 공시가격과 시세 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며, 특히 저가 주택 구간에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공시가격/시세)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균형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특히나 저가 주택 구간에서 이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 안정화 도구로 활용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하였다. 주택 시장의 급등락에 따라 세율과 제도가 빈번히 변경될 경우, 세수 변동성이 심화되고 지방재정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이는 주택 시장의 변동성을 오히려 확대할 위험이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보유세를 주택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가격 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균형 발전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활용되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세수 감소로 인한 반발이 예상되며,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광역시·도별 재산세 공동과세나 권역별 공동과세를 통해 지역 간 세수 편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재산세를 공동 관리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가상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유지하며 재산세로 전환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 고액 구간을 신설하는 방식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두 시나리오 모두 대도시(특히 서울)에서는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세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만 세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재정 균형 발전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논의가 진행될 경우, 지역 간 세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광역시도 내 공동과세나 권역별 재산세 통합 관리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주택분만을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을 중앙에서 재배분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에서 조세 형평성과 지역 간 재정 균형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각적인 접근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파레토 효율성 측면에서의 조세-이전 체계 평가

최인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문지웅 |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우리나라의 현 조세-이전 체계(tax-transfer system)를 구성하는 각각의 제도들은 서로 다른 시점에 각기 도입되어 독립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가령 2006년 12월 30일 관련 조문이 신설된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2024년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이 확대되어 왔는데, 이와 같은 변화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역시 매년 공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 지급기준이 변동되어 왔다. 이와 같이 조세-이전 체계를 이루는 각 제도가 독립적으로 도입·발전됨에 따라 해당 제도가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이나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폭넓고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다. 반면 다양한 제도들이 중첩되어 형성되는 조세-이전 체계 전반의 효율성 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조세지출 및 이전지출 규모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세-이전 체계의 효율적 설계 및 운영을 위한 고민

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 측면에서 우리나라 현 조세-이전 체계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파레토 효율성은 어느 누구의 효용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개인(들)의 효용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주어진 조세-이전 체계 내지 관련 정책의 변화를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행태 변화와 조세수입의 변화 등을 모두 기술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Bierbrauer et al.(2023)이 제시한 모형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Bierbrauer et al.(2023)이 제시한 모형은 가상의 경제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보다 직관적 수준에서 타당한 몇 가지 가정만을 도입·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주어진 조세-이전 체계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통계량 도출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해당 충분통계량을 도출하고 그 성질을 분석함으로써 주어진 조세-이전 체계의 파레토 효율성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Bierbrauer et al.(2023)은 해당 층분통계량을 조세수입 함수라 명명하고 조세수입 함수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소득에 대해 약하게 감소하는 것이 주어진 조세-이전 체계가 파레토 효율적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임을 증명하였는데,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현 조세-이전 체계의 큰 틀을 구성하는 소득세제, 근로·자녀 장려세제, 그리고 생계급여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현 조세-이전 체계의 파레토 효율성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층분통계량을 도출하고 그 성질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 조세-이전 체계의 특성 및 특정 유형 가구들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 6가지 가구 유형(1자녀·2자녀 한부모 가구, 1자녀·2자녀 홀별이 가구, 1자녀·2자녀 맞벌이 가구)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현 우리나라 조세-이전 체계는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세수 결손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각 가구에 최소 1.0만원(1자녀 맞벌이 가구)에서 최대 11.6만원(2자녀 한부모 가

구)까지의 공적 이전소득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비효율성이 저소득 구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 참조). 이는 현 조세-이전 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할 경우 저소득 구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본 연구는 제도 설계·개편의 단순성 및 현실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파레토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세제 소득상한액 인상 및 생계급여의 근로소득공제율 상향이 고려될 수 있음을 추가로 보였다. 즉,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세제 소득상한액 인상안의 경우 파레토 개선으로 이어질 수는 있으나 그 개선 정도가 매우 제한적인 세법 개정 방향임을 확인하였으며,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를 상향 조정안의 경우 현 생계급여의 지급 방식으로부터 유발되는 한계세율의 급격한 변화 등이 완화에 따라 현 조세-이전 체계의 비효율성이 일정 수준 해소될 수 있음을 보였다. 다만 생계급여의 근로소득공제율 상향이 생계급여·근로장려금 중복수급 불허와 동반될 경우

표 1 가구 유형별 조세-이전 체계의 비효율성 측정 결과

(단위: 만원, %)

가구 유형	비효율성	
	전체 구간	저소득 구간
1자녀 한부모	5.32	5.18(97.31)
2자녀 한부모	11.56	11.23(97.20)
1자녀 홀별이	2.86	1.98(69.13)
2자녀 홀별이	4.86	4.17(85.84)
1자녀 맞벌이	1.04	1.01(97.02)
2자녀 맞벌이	2.92	2.89(99.10)

주 1. 한부모·홀별이 가구는 법령 기반 소득세 함수, 맞벌이 가구는 자료 기반 소득세 함수 활용
2. 저소득 구간은 5,000만원 이하 구간을 의미하며, () 안은 전체 비효율성 대비 비중(%)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추정

표 2 파레토 개선 여부 및 정도: 근로소득공제를 상향 및 중복수급 불허

(단위: 만원, %)


가구 유형	공제율 상향 및 중복수급 불허 시		최적 개선 시 파레토 개선 정도
	파레토 개선 여부	파레토 개선 정도	
1자녀 한부모	○	0.62 (11.71)	5.32
2자녀 한부모	○	2.72 (23.56)	11.56
1자녀 홀벌이	×	-	2.86
2자녀 홀벌이	○	0.12 (2.54)	4.86
1자녀 맞벌이	×	-	1.04
2자녀 맞벌이	×	-	2.92

주 1. 한부모·홀벌이 가구는 법령 기반 소득세 함수, 맞벌이 가구는 자료 기반 소득세 함수 활용
 2. () 안은 최적 개선 시 파레토 개선 정도 대비 개선안의 파레토 개선 정도의 비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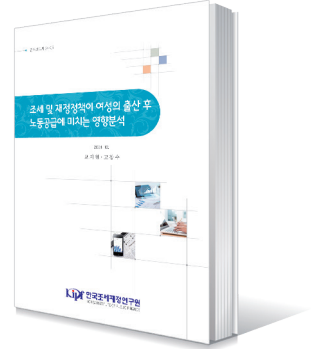
파레토 개선 가능 여부 및 비효율성 완화 정도가 고려되는 가구 유형에 따라 이질적일 수 있음을 추가로 제시하였다(표 2 참조).

파레토 효율성 관점에서의 현 조세-이전 체계에 대한 본 연구의 평가 결과는 각 제도 설계 및 개편에 있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령 실증분석 결과로부터 현 생계급여 지급 방식이 조세-이전 체계의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해당 제도의 도입 및 운영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비효율성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특정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타 제도들과의 정합성 역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조세-이전 체계 전반의 효율성은 궁극적으로 각 제도들이 중첩됨으로써 결정되는 각 소득수준별 한계세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특정 제도의 개선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가 다른 제도의 설계적 특징에 의해 상쇄될 수 있는 여지를 염두에 두는 등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개별 제도의 도입 및

개편 등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각종 공제 제도들과 소득 지원 정책들을 과감히 통폐합함으로써 조세-이전 체계 전반의 단순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이전 체계가 파레토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조세수입 함수의 단조 감소성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제도 통폐합을 통한 단순화는 한계세율의 급격한 변화 등을 방지함으로써 해당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정비를 통해 소득세제의 단순화를 추진하는 한편,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다수의 소득지원 사업들을 간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세-이전 체계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세 및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분석

고지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창수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54.1%로 10년 전인 2013년(48.9%)에 비하여 5.2%가량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자녀 출산 및 양육기 여성의 노동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은 여전히 관찰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여성 고용률은 25~29세에 74.3%로 최고점을 기록하다가 35~39세, 40~44세에 9.6%p 감소한 64.7%의 최저점을 기록한다. 45~49세 고용률이 67.5%를 기록하며 상승하기 시작하나 그 이후로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최고 고용률 수준(74.3%)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렇듯 육아(42%)¹⁾는 여전히 경력단절의 주요 요인이며 이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

무관련 제도를 포함한 여성의 일·가정의 양립정책이 있는데 관련예산은 2013년 7,099억원에서 2017년 1조 1,938억원으로 13.9%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²⁾ 2021년 지출규모는 2조 973억원에 이른다. 이 외에도 금전적·시간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양육지원정책 또한 여성의 출산 후 노동공급 결정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예로는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교육부의 누리과정 지원, 유아교육 지원 등이 있으며, 관련 예산은 2010년 3.2조원에서 2021년 15.2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³⁾

반면, 조세제도를 통한 지원은 제도 사용이나 활용을 위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출산 이후 여성의 노동공급에 직접적으로 영

1) 여성가족부, 『2022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2022.

2) 최승문·김나영, 『여성고용 증대를 위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3) 권성준·윤정환, 「영유아기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과 양육지원 재정정책에의 함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향을 미칠 수 있는 조세지원으로는 경력단절 여성 등(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이 있으나, 경력단절여성의 제도 사용⁴⁾은 많지 않아 보인다. 여성의 노동공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녀양육비 경감을 위한 조세지원으로는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등이 있으나 그 효과성을 추정하거나 이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주된 정책적인 수단으로 사용된 재정정책과 앞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조세정책이 여성의 출산 이후의 노동공급 및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더 자세하게는 재정정책으로는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와 육아휴직을, 조세정책으로는 자녀장려세제의 도입과 근로·자녀장려세제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향후 보완점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본고의 제V장에서는 여성의 지속적인 근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재정사업인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와 육아휴직 사용량 간 존재하는 관련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및 어린이집 공급에 대한 시군구 수준의 자료와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공급의 확대가 지역의 육아휴직 사용 총량과 여성 고용 관련 변수들에 미친 영향을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어린이집의 공급 확대는 지역 여성의 육아휴직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 확대는 지역 거주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었다. 양질의 보육시설이 증가할 경우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대신,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 의존도를 높이고 휴직제도를 사용하지 않을 유인이 존재할 수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 여성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여성의 고용 규모를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분석 결과는 전체적인 여성의 고용 촉진 효과가 뚜렷하게 관찰된 반면 육아휴직 규모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며, 따라서 근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경향은 다소 감소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해당 결과가 근로 여성의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추정 결과에서 분리하기 어려우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재학 이상 연령대의 근로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없는 점은 본 분석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특히 인구이동으로부터 결과가 주로 기인했다면 지역 간 보육시설 인프라의 경쟁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공급 계획 및 재원 조달의 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VI장에서는 조세정책이 출산 후 여성의 근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저소득자의 자녀양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자녀장려금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자녀장려금이 조세지원 중에 최근 확대된

4) 오종현 외(2023)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신청자 중 경력단절 여성의 비중을 2022년 기준 0.1%로 보고한다.

재정지원을 통한 현금성 지원제도들과 성격이 유사하며 실증분석을 위한 충분한 변동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분석을 위해서 재정패널 2~16차(2009~2023년)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벤트스터디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s event study model) 방식을 통하여 자녀장려금의 영향을 받은 어머니(처치군)의 근로유무 및 근로정도의 동적변화(출산 3년 전~출산 1년 후)를 살펴보았다. 처치군과 통제군은 자녀의 출생연도에 따라서 출산 당시 제도 인지 및 수급자격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5년 이후 첫째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는 처치군, 그 이전에 출산한 경우를 통제군으로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장려금 도입 이후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의 출산 1년 후 외연적 노동공급(총소득 유무)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현금성 지원정책에서 종종 발견되는 여성노동공급에 대한 부정적인 노동공급의 효과가 자녀장려금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가구의 대부분(79%)⁵⁾이 근로장려금을 함께 수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의 확대를 함께 고려하고, 출산 후 관측시점을 3~5년까지로 확장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동일한 재정패널 2~16차(2009~2023년) 데이터를 사용하고 Bastian and Michelmore(2018)의 방식과 유사하게 제도에 대한 노출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실제 수급액에 대한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로 사용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즉, 첫째아 출산연도에 따라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대로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자녀장려금의 합을 제도노출변수(Exposure Variable)로 정의하고 이를 사용하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액은 어머니의 출산 이후 노동공급에 유의한 변화를 미치나 그 크기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화 여부도 출산 이후 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는데, 출산 후 1년보다는 출산 후 3년 및 5년 후에 긍정적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앞선 분석과 동일하게 현금성 지원정책에서 발견되는 부정적인 노동공급의 효과가 자녀장려금에서 발견되지 않음과, 출산 후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현금성 지원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양질의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여성의 고용 장려와 그에 따른 소득증가, 인적자본 축적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제V장의 분석 결과는 양질의 보육시설이 증가할 경우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대신,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 의존도를 높이고 휴직제도를 사용하지 않을 유인이 존재할 수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 여성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여성의 고용 규모를 증가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영유아의 인구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나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보육시설 이용이 아동 발달 및 복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판단도 필요할 것이다.

5) 국세통계연보(2023).

두 번째는 양육비용 부담 감소라는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지원정책이라도 정책수단에 따라서 모(母)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이를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VI장의 분석 결과는 동일한 현금성 지원이라도 자녀장려금과 같이 소득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세제지원의 경우 또는 근로장려금 중복수급으로 인하여 근로유인효과가 더하여지는 경우 부정적 효과가 완화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현금성 지원정책은 본래 자녀양육비용 절감을 통하여 부가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여성의 노동공급 제고만을 평가지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가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의 상당부분(40%)을 설명한다는 연구결과(조덕상·한정민, 2024)를 참고할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출산율 제고와 여성 노동공급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본고의 한계점을 논의하며 마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데이터 및 방법론의 한계로 조세 및 재정정책을 동시에 고려한 효과성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출산 후 여성의 시장참여를 위한 다양한 조세 및 재정정책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함께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임에도 이를 동시에 고려한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본 연구가 가진 분명한 한계점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노동공급 관점에서만 제도를 평가하였으므로 여성의 출산 및 영유아 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함께 고

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즉, 개인은 주어진 제도적 환경 속에서 노동공급, 출산, 양육에 대한 의사결정을 동시에 내릴 것이나 이러한 점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함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까지 장기간 주어지는 데 비해 본고는 출산 5년 후까지만을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2015년에 지급되기 시작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수급한 가구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수급하는 경우 또한 많지 않을 수 있어 이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향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자료수집 및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세정연구팀〉



미국

2025년 세금 사기 사례 발표

- ◆ 미국 국세청은 2025년 2월 27일 더티 더즌(Dirty Dozen)으로 불리는 주요 세금 사기 수법을 발표하며, 납세자, 기업 및 세무 전문가들에게 주의를 당부함¹⁾
- 더티 더즌은 미국 국세청에서 납세자와 세무전문가의 세금 사기 관련 경각심을 높임과 더불어 이들의 보호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으로, 12가지 주요 세금 사기 수법을 소개하고 있음²⁾
- 소개된 사례는 연중 상시적으로 발생하나, 세무신고 기간에는 발생 빈도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임
- 세금 사기의 주요 유형으로는 허위정보를 기반으로 이를 유포하거나, 허위 세무 신고(공제 등)가 주를 이루었음
- 작년의 경우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① 연방 및 주정부 세무당국, ② 민간부분의 소프트웨어 및 금융 회사, ③ 주요 세무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음³⁾
- 미국 국세청은 더티 더즌 인식도 제고를 위해 세무제도의 악용을 권장하거나 의도적으로 부적절한 신고서를 작성하는 이들에 대해 신고를 권장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모두 접수를 받고 있음

1) Internal Revenue Service, "Dirty Dozen tax scams for 2025: IRS warns taxpayers to watch out for dangerous threats," <https://www.irs.gov/newsroom/dirty-dozen-tax-scams-for-2025-irs-warns-taxpayers-to-watch-out-for-dangerous-threats>, 검색일자: 2025. 2. 28.

2) 12가지 수법 : ① 이메일 피싱(Phishing) 및 스미싱(Smishing) ② SNS에서 잘못된 정보 유포 ③ 미국 국세청의 개인 온라인 계정 도용 ④ 가짜 자선단체 ⑤ 허위 유류세 공제(Fuel Tax Credit) 청구 ⑥ 허위 병가 및 가족휴가 공제(Sick Leave & Family Leave Credit) ⑦ 허위 자영업자 세액공제(Self-Employment Tax Credit) ⑧ 허위 가정부 고용세(Household Employment Tax) 신고 ⑨ 원천징수 과장 공제(Overstated Withholding Scam) ⑩ 허위적 절충 납세 합의안(Offer in Compromise, OIC) ⑪ 유령 세금신고 대행자(Ghost Tax Return Preparers) ⑫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 및 신종 고객 사기

3)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states, tax industry announce new joint effort to combat growing scams and schemes; ongoing coordination to follow in footsteps of Security Summit's identity theft efforts to help taxpayers and protect revenue," <https://www.irs.gov/newsroom/irs-states-tax-industry-announce-new-joint-effort-to-combat-growing-scams-and-schemes-ongoing-coordination-to-follow-in-footsteps-of-security-summits-identity-theft-efforts-to-help-taxpayers-and>, 검색일자: 2025. 2. 28.



캐나다

‘탄소 리베이트’ 비과세 추진

- ◆ 캐나다 재무부는 2025년 2월, 중소기업이 받는 탄소 리베이트(Carbon Tax Rebate)를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⁴⁾
- 캐나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 따라 탄소세 수익의 일정 부분을 약 60만개의 중소기업에 환급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2024년 12월 16일, 미니 예산안을 통해 수취한 탄소 리베이트를 비과세하겠다고 명시함
- 반면 캐나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받는 탄소 리베이트는 과세 대상이라고 통보함
- 개인이 받는 탄소 리베이트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중소기업이 받는 탄소 리베이트의 경우 비과세로 처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캐나다 독립사업연맹(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CFIB)은 2025년 2월 10일, 국세청과 정부의 입장이 상반된다고 지적함
- 이에 캐나다 재무부는 탄소 리베이트를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중소기업은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아일랜드

혁신기업 투자에 대한 감면제도 신규 지침 발표

- ◆ 아일랜드는 2025년 3월 3일,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혁신기업 투자에 대한 감면제도의 운영을 설명하는 신규 지침(Guidance on Relief for investment in innovative enterprises)⁵⁾을 발표함⁶⁾
- 혁신기업 투자(엔젤 투자)에 대한 감면제도는 혁신적인 중소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임⁷⁾
- 적격 투자자는 특정 조건에 따라 적격 회사에

4) Taxnotes, "Canada Says Carbon Tax Rebate Legislation Is Coming," 2025. 2. 24., *TAX NOTES INTERNATIONAL*, VOLUME 117, NUMBER 8, p. 1317

5) 아일랜드 국세청, "Revenue eBrief No. 054/25 - Guidance on Relief for investment in innovative enterprises - Chapter 6A of Part 19 TCA 1997," 2025. 3. 3.,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ebrief/2025/no-0542025.aspx>, 검색일자: 2025. 3. 10.

6) IBFD, "Ireland - Revenue Begins Accepting Qualification Applications for 'Investment in Innovative Enterprises' Relief," 2025. 3.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3-05_ie_1.html, 검색일자: 2025. 3. 10.

7) Sarah Paez, "Ireland Rolls Out Capital Gains Tax Relief for Angel Investors," 2025. 3. 10., *Tax Notes International*, Volume 117, 검색일자: 2025. 3. 10.

대한 적격 투자 매각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16%의 감면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파트너십을 통한 투자의 경우 18%의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됨
- 적격 회사(qualifying company)는 계속기업 인증(certificate of going concern) 및 상업형 혁

신 인증(certificate of commercial innovation)의 두 가지 인증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일랜드 국세청에 신청하여야 함

- 적격 주식에 대한 적격 투자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적격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처분하기 전 최소 3년간 보유해야 함



프랑스

고소득 자산가에 대한 재산세 도입 논의

- ◆ 프랑스 하원은 2025년 2월 20일, 순자산이 1억유로⁸⁾를 초과하는 개인에게 2026년부터 최소 2%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⁹⁾
- 고소득 자산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자가 보유한 모든 자산¹⁰⁾을 대상으로 하며, 순자산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소득세, 부동산세, 사회보장기여금, 고소득자 특별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이 납세자에게 최종 과세됨

- 납세자가 거주자이거나 과세연도 이전 5년 내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전 세계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과세연도 이전 5년 내의 기간 동안 비거주자인 경우 보유하는 프랑스 내 자산을 대상으로 함
- 해당 입법안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며, 프랑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형태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고소득 자산가에 대해 다른 유형의 재산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임

8) 2025년 3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71억 7천만원임

9) IBFD, "National Assembly Adopts Minimum 2% Wealth Tax on Ultra-High-Net-Worth Individuals," 2025. 2.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2-21_fr_1.html, 검색일자: 2025. 3. 10.

10) 동산 부동산, 사업용 자산, 생명보험 계약, 신탁을 통해 보유한 자산을 포함함



이탈리아

GloBE 정보보고서 제출을 위한 통지절차 법령 발표

- ◆ 이탈리아 재무부는 최소 과세 지침(Minimum Taxation Directive, 2022/2523)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가 GloBE 정보보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 GIR)를 다른 관할권에서 과세 당국에 통지하는 절차를 명시한 법령을 발표함¹¹⁾
- 해당 지침의 적용에 따라 이탈리아에 있는 각 구성 법인(CE, Constituent entity)은 GloBE 정보보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를 과세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예외 및 지출 의무 면제 요건은 아래와 같음
- 최상위 모기업(UPE, the Ultimate parent entity) 또는 다른 관할권의 지정 신고 법인이 해당 관할권에서 GloBE 정보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이탈리아 세무 당국과 해당 관할권 간 GloBE 정보보고서 자동 교환을 위한 유효한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한 경우
- 이번 법령은 통지 절차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며, 통지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과세 당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고서 양식과 추가 지침 발행 예정을 명시함
- 해당 법인은 관련 회계연도 종료 후 최대 15개월 이내에(또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을 적용받는 첫 회계연도의 경우 최대 18개월 이내에) 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 만약 통지서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할 경우, 최대 10만유로¹²⁾의 행정 벌금이 부과되며 지연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가 포함된 제출의 경우 벌금을 감경함



스웨덴

고용주를 위한 해외 근무 과세 개정안 제안

- ◆ 스웨덴 재무부는 2025년 2월 13일, 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안함¹³⁾
- 이 개정안의 목적은 스웨덴의 경제적 고용주에 의해 해외에서 임시로 수행되는 근무가 특정 조건하에서 스웨덴 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임

11) IBFD,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Sets Notification Procedure for GloBE Information Return Filing," 2025. 2. 2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2-27_it_1.html, 검색일자: 2025. 3. 3.

12) 2025년 3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억 5,360만원.

13) IBFD, "Sweden Proposes Amendments to Taxing Work Performed Abroad for Swedish Employers," 2025. 2.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2-19_se_1.html, 검색일자: 2025. 3. 10.

- 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소득세법」(1991:586)은 스웨덴 기업 또는 스웨덴 내 외국 기업의 고정사업장에서 고용되거나 임무를 수행하는 해외 거주자가 해외에서 수행한 근무가 특정 조건¹⁴⁾ 하에 스웨덴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법률 자문은, 해외에서 임시로 수행되는 근무가 스웨덴의 경제적 고용주와 관련이 있을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해당 근무가 스웨덴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함
- 스웨덴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구조상, 이러한 법안의 명확화는 사실상 덴마크 거주자에 게만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는 스웨덴과 덴마크 간 특정 조세 문제에 관한 협정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스웨덴이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됨
- 개정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5년 6월 30일 이후 수행된 근무에 대해 급여 또는 그와 유사한 보상이 지급되는 경우에 처음 적용됨



덴마크

DAC8 이행을 위한 법안 도입

- ◆ 덴마크는 2025년 2월 26일, 2011년 행정협력지침(2023/2226)의 개정 지침인 DAC8을 덴마크 법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함¹⁵⁾
- 이 법안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암호화자산 보고) 암호화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암호화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이 정보는 EU 회원국 간에 교환되어 조세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사용됨
 - (정보교환 범위 확대) 법안은 EU 회원국 간의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확대하여, DAC8에 따라 전자화폐에 대한 보고 및 정보 교환을 포함함
 - (세무장관의 권한) 세무장관은 행정명령을 통해 암호화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보고 의무와 세금 행정협력지침에 대한 기타 개정안을 구현하기 위한 보다 상세한 규정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 (OECD 모델 규정) 법안은 또한 암호화자산에 관한 보고 및 정보 교환과 관련된 OECD 모델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14) 수행된 업무가 스웨덴의 경제적 고용주와 관계 있어야 하며, 업무의 성격이 스웨덴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며, 해외에서 수행된 업무가 임시로 제한된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를 의미함

15) IBFD, "Denmark Introduces Bill to Implement DAC8," 2025. 2. 2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2-27_dk_1.html, 검색일자: 2025. 3. 10.

- 법안은 2025년 5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변경 사항은 DAC8의 이행 기한에 맞춰 추후 시행 될 예정임



일본

세무조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

- ◆ 일본 국세청은 AI를 활용하여 신고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세무 분야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16) 17)}
- 일본 국세청은 2022업무연도부터 소득세 조사에 AI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2023업무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대상자 선정에 AI를 활용함
 - 인공지능(AI)은 납세자가 과거에 제출한 세금 신고서 및 조사결과를 학습하고 분석하여, 신고 누락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2023업무연도 동안 AI가 판별한 조사대상에 대해 1,665억엔¹⁸⁾의 추징세액이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약 193억엔¹⁹⁾ 증가하였음
- 일본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추가 징수된 소득세액은 통계 공표가 개시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 2023업무연도의 세무조사 건수는 60만 5,077건으로 2022업무연도의 63만 7,823건에 비해 약 3만건 이상 감소함
 - 2023업무연도의 소득세 추징세액은 1,398억엔²⁰⁾이며, 신고 누락액은 9,964억엔²¹⁾으로 2022업무연도의 소득세 추징세액 1,368억엔²²⁾과 신고 누락액 9,041억엔²³⁾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16) The Sankei Shimbun, 「税務調査にAI導入「強まる監視網」効率的に追徴税増額も調査官のスキル影響懸念」, <https://www.sankei.com/article/20250212-M4ULHZCQWJPLLAZSWZ22SAMZDY/>, 2025. 2. 12., 검색일자: 2025. 3. 10.

17) 디지털 투데이, 「日 국세청, AI 도입했더니...세무조사 효율성·추징세액 ↑」,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318>, 2025. 2. 13., 검색일자: 2025. 3. 10.

18) 2025년 3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6,431억원임

19) 2025년 3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04억원임

20) 2025년 3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3,796억원임

21) 2025년 3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조 8,334억원임

22) 2025년 3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3,500억원임

23) 2025년 3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조 9,225억원임



인도

「소득세법」 간소화 법안 의회 제출

- ◆ 인도 재무부(MOF)는 2025년 2월 13일, 「소득세법」의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가독성을 향상시킨 「소득세법」 간소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²⁴⁾
 - 이 법안은 기존의 개정 사항을 통합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단순화하며, 1,200개 이상의 단서와 900개 이상의 설명을 삭제하여 「소득세법」을 재구성하였으나, 정책적 변화나 세율 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음
 -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납세자는 타 법률이나 규칙을 참조할 필요가 없이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전의 「소득세법」에서는 타 법률이나 규칙을 준용하는 규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납세자가 이를 해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음
- MOF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누적된 개정 사항, 복잡한 법률 용어, 지나치게 상세한 법률 조항, 중복된 규정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 20,976개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호주와 영국의 법률 간소화 사례를



호주

감사원의 AI 거버넌스 권고안에 동의

- ◆ 호주 국세청은 2025년 2월 24일 호주 국립감사원(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이하 ANAO)에 의해 이루어진 AI 거버넌스 감사에 대한 보고서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함^{25) 26)}
 - ANAO는 호주 국세청이 AI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 계획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를 위해 감사를 실시하였음
 - 감사 기준은 AI 도입을 위한 거버넌스, AI 모델의 설계, 개발 및 배포를 위한 조치, AI 도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 현황 등임

24) Tax Note, "Income Tax Act Simplification Bill Sent to Indian Parliament," Kiarra M. Strocko, <https://www.taxnotes.com/tax-notes-international/legislation-and-lawmaking/income-tax-act-simplification-bill-sent-indian-parliament/2025/02/17/7r3r8>, 2025. 2. 17., 검색일자: 2025. 3. 10.

25)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welcomes ANAO audit report on Governance of AI," <https://www.ato.gov.au/media-centre/ato-welcomes-anao-audit-report-on-governance-of-ai>, 검색일자: 2025. 2. 28.

26)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t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https://www.anao.gov.au/work/performance-audit/governance-of-artificial-intelligence-the-australian-taxation-office>, 검색일자: 2025. 2. 28.

-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국세청은 AI 도입에 있어 부분적으로 효과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일부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함
- 대표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AI 모델 중 약 74%가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데이터 윤리 평가를 받지

않았음(2024년 8월 기준)

- ANAO는 공개된 감사 결과보고서에 일곱 가지 권고안을 제시하였는데,²⁷⁾ 호주 국세청은 이러한 권고안에 대해 모두 동의하며 AI 프레임워크를 개선해나갈 예정임



OECD

BEPS Action 14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상호검토결과 발표

- ◆ OECD는 2025년 3월 4일, BEPS Action 14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에 대한 상호검토(peer review) 결과를 발표함²⁸⁾
- BEPS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2022년 12월 상호검토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에 합의하여 이중과세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시성을 개선하고자 함
- 새로운 방법론은 의미있는 MAP 경험이 없는 관할국에 대해 간소화된 상호검토를 적용하고, 의미있는 MAP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 관할국에 대해서는 정식 상호검토를 적용하도록 함
- 간소화된 상호검토의 주요 목적은 MAP 경험이 거의 없는 관할국에 대한 상호검토를 통해 보다 강화된 MAP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로 대상 관할국은 MAP 도입을 위한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할 의지를 보여줌
- OECD는 2025년 3월 도미니카, 아이슬란드, 몬테네그로, 페루 등 10개국에 대한 간소화된 상호검토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상호검토 진행 계획에 따라 각 관할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임

27) 제시된 권고안은 ① 자동화 및 AI 전략과 전사적 전략 간의 연동, ② 기관 전체의 조직구조와 AI 도입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명확한 정의 ③ AI 관련 데이터의 악용 가능성과 통제방안 검토 ④ 윤리적 원칙에 부합하는 AI 도입 지원 조치 개선 ⑤ AI의 효과적 설계, 개발, 배포 및 검증에 위한 정책 개발 ⑥ AI 및 자동화 전력에 대한 성과 측정 및 평가 체계 구축 ⑦ AI 도입 관련 정보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임

28) OECD, "Inclusive Framework on BEPS shows progress in making dispute resolution more effective," https://www.oecd.org/en/about/news/announcements/2025/03/inclusive-framework-on-beps-shows-progress-in-making-dispute-resolution-more-effective.html?adestraproject=OECD%20Tax%20News&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06-03-2025&utm_content=BEPS%20Action%2014%20-%20Web%20announcement&utm_term=ctp&utm_medium=email&utm_source=Adestra, 검색일자: 2025. 3. 10.

주요국의 재정동향

〈자료수집 및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EU

- ◆ EU 집행위원회, '2024 채무 지속가능성 보고서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4)' 발표(2025. 3. 17.)¹⁾²⁾
 - (GDP성장률) 2024년 EU의 실질 GDP 성장률은 0.9%, 2025년 1.5%, 2026년에는 1.8%로 전망됨
 - (물가상승률) 2023년 6.4%에서 2024년 2.6%, 2025년 2.4%, 2026년 2.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 전망) 재정적자는 감소할 전망이지만, 채무 비율은 소폭 증가 예상
 - (재정적자) 2025년 추가 긴축 재정과 2026년 경제
- ※ '채무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³⁾의 연례 중간 업데이트 보고서로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DSA)과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S0, S1, S2)를 기초로 재정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평가함
- (경제 전망) EU 경제는 점진적인 경제 회복세가 예상되고, 물가상승률은 낮아지고 있음

표 1 EU 재정 지속가능성 위험 분석 주요 내용

구분	단기 위험	중기 위험	장기 위험
측정 지표	S0 지표 재정 및 금융-경쟁력 변수들을 기반으로 한 조기 경보 지표(총재정조달 수요 포함) • S0 지표의 재정 하위 구성변수 재정수지, 기초재정수지, 총채무, 순채무, 총재정조달 수요, 금리-성장률 차, 정부지출 증감률 등 • S0 지표의 금융-경쟁력(financial & competitiveness) 하위 구성변수 실질 GDP 성장률, 만기수익률 구조, 순대외자산 포지션, 가계 순저축률, 민간부문 부채, 경상수지 등	채무 지속가능성(DSA) 분석(Toolkit) • 기준 시나리오(정책불변, 향후 10년) • 결정론적 분석(Deterministic Analysis)(4개 경제 충격 반영) • 확률론적 분석(Stochastic Analysis)(광범위한 불확실성 고려)	S1 지표 2070년까지 국가채무를 GDP의 60%로 낮추기 위해 2026년에 필요한 재정 노력 측정(2024년 고령화 보고서에서 제시된 고령화 관련 지출 변화 전망 반영) S2 지표 장기적으로 채무를 안정화하기 위해 2026년에 필요한 재정 노력 측정(2024년 고령화 보고서에서 제시된 고령화 관련 지출 변화 전망 반영)
추가 분석	추가 검토(위험/위험 완화 요인) (부채 구조, 공공 채무 외 정부 부채(특히 우발부채), 정부 자산 및 순채무 등 포함)		

주 원문 내용을 토대로 설명 추가

출처 European Commission, *Debt Sustainability Report 2024, 2025, Graph 1.*,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debt-sustainability-monitor-2024_en, 검색일자: 2025. 3. 19.

1) EU 집행위원회,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4*, 2025. 3. 17.,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debt-sustainability-monitor-2024_en, 검색일자: 2025. 3. 19.
 2) EU 집행위원회 '채무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Debt는 일반정부 총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를 의미하고, 발행 국제 및 단/장기 차입의 명목상 채무를 포함하며, 우발부채는 포함하지 않음. 본 동향에서는 정부 보증 채무와 연금 지급 약속 등을 포함하는 부채(Liabilities)와 구분하여 채무로 표기
 3)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는 EU 회원국의 단기, 중기, 장기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로 3년마다 발간

활력 회복으로 각각 GDP 대비 3.0%, 2.9%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2023년 3.5%, 2024년 3.1%)

▶ 2025년에는 각국에서 추가 긴축 재정 운영이 예상되나, 그 효과는 세수 감소와 기타 요인들로 인해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이며, 2026년에는 기존 정책 조치에 따라 적자 감소 전망

- (채무) EU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23년 82.1%로 2020-2023년 사이에 9%p 감소하였으나, 2026년까지 83.4%로 소폭 증가할 전망

▶ 이자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격차($r-g$)로 인한 스노우볼 효과(Snowball effect)⁴⁾와 재정 외 요인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스톡-플로우 조정(Stock-Flow Adjustment)⁵⁾이 주로 영향을 미침

● (단기*) 전년에 비해 단기 재정 지속가능성 위험이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세계 금융위기 수준보다는 낮음(표 2 참고)

* 향후 1년간 재정 스트레스 발생 가능성을 식별하는 종합 지표(SO)로, 재정·금융 경쟁력 관련 25개 변수를 결합하여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정 스트레스 발생 가능성을 예측함. SO 지표의 하위 구성 요소는 '재정 리스크'와 '금융-경쟁력 리스크'로 크게 구분되고, SO 지표와는 별도로 단기 총 자금 조달 수요(Gross Financing Needs, GFNs)를 함께 고려함

- (전체) EU 회원국 27개국 중 단기 재정 지속가능성 리스크가 고위험에 해당하는 국가는 2개국이고,

중위험은 1개국, 저위험 국가는 24개국으로 평가

- (고위험)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는 재정적자, 국제수지 불균형 등으로 단기 리스크가 높음

- (중위험) 라트비아는 경기조정 재정수지가 임계값을 근소하게 초과하여 중위험으로 판단되었으나, 경제선 수준으로 그러한 요인이 없었다면 저위험으로 평가될 수 있었음

● (중기*)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등 11개국에서 높은 채무 수준이 지속되거나, 채무 증가로 인해 중기 리스크가 높음

* DSA(Debt Sustainability Analysis)분석을 사용하여, 기준 시나리오는 향후 10년간(이번 보고서 기준 2035년까지) 정책 불변을 가정한 분석을 기초로 하고 추가 2개 시나리오를 종합하여 판단함.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네 가지 충격 요인(네 가지 충격 요인은 과거 재정 행태로의 회귀, 계획된 재정 구조조정의 일부만 실행, 낮은 ' $r-g$ (이자율-성장률)' 차이, 금융시장의 일시적 혼란을 가정)을 가정하여 민감도를 분석하고, 마지막 시나리오는 5년간(2029년까지) 광범위한 잠재 충격을 가정하여 불확실성을 고려함. 중기 총 자금 조달 수요를 바탕으로 잠재 유동성 분석을 보완하여 중기 재정 리스크를 평가함.

- (EU) 재정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고령화 비용 증가와 이자 지출의 점진적 상승으로 향후 10년 동안 채무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⁶⁾

- (전체) 중기 재정 지속가능성 리스크 고위험 국가는 11개국이고, 중위험은 9개국, 저위험 국가는 7개국으로 평가

4) 채무가 이자 지출과 경제성장(인플레이션 및 실질 성장 포함)에 의해 자연스럽게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메커니즘을 의미하며, 이는 특히 이자율과 성장률 간의 차이($r-g$)에 크게 좌우됨

5) 특정 기간 동안 정부 재정적자와 채무 수준 변화 간의 불일치를 의미함. 이 조정은 재정수지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정부 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반영한 것으로 예를 들어, 민영화·대출 자산 매입 같은 금융 거래, 현금 유동성의 축적 혹은 사용, 채무의 가치 변동(예: 환율 변동), 현금주의 기준과 발생주의 기준 간의 회계 차이 등이 해당됨

6) 시나리오별 예측: ①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예측 기간 동안 ' $r-g$ (이자율과 성장률 차이)'가 점점 커지며 2035년까지는 약간 음(-)의 값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하며, 재정 긴축이 없는 경우 ' $r-g$ 차이'가 채무 증가 속도를 늦추는 '스노우볼 효과(snowball effect)'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 지출 증가 압력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따라서 정책 불변 가정 하에 향후 10년 동안 고령화 비용 증가와 이자 지출의 점진적 상승으로 채무 비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 ② 네 개의 충격을 반영한 대안 시나리오에 따르면 구조적 기초재정수지가 낮은 적자 수준(지난 15년간 평균)으로 다시 수렴한다면, 채무 증가 폭은 기준 시나리오보다 덜 뚜렷할 수 있는 반면, 재정 조정이 미약하거나, ' $r-g$ ' 차이가 덜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일시적인 금융 스트레스가 발생할 경우 채무 증가 속도는 더 악화될 수 있음. ③ 불확실성을 가능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기준 시나리오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음을 보여줌. 1) 2029년까지 유로지역 채무 비율이 GDP 대비 80~101% 사이에 있을 확률이 80%이며, 2)2029년 채무 수준이 2024년 89.1%보다 낮은 확률은 43%, 3) 2029년 채무 비율이 91%를 초과할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확률은 반반인 것으로 나타남

- (고위험)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이미 채무 비율이 높고 계속 증가), 오스트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채무 비율이 9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그리스(채무 비율이 감소하나 높은 수준 유지) 등
- (중위험) 독일,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2035년까지 채무 60% 초과 전망), 리투아니아(채무 증가 가능성 높음), 불가리아, 체코(채무 비율은 60% 미만 유지, 재정 조정 여력 제한적), 포르투갈(채무 수준이 여전히 높고 추가 재정조정 여력 제한적) 등

표 2 EU 회원국의 재정 지속가능성 리스크 분류

국가	단기 리스크	중기 리스크		장기 리스크
	Overall Short-term risk category	Overall Medium-term risk category	기준시나리오, 2035년 채무 전망 (GDP 대비 %)	Overall Long-term risk category
벨기에	저	고	126	고
불가리아	저	중	39	저(중)
체코	저	중	53	중
덴마크	저	저	17	저
독일	저	중	66	중
에스토니아	저	저	30	저
아일랜드	저	저	13	중
그리스	저	고	119	저
스페인	저	고	112	중
프랑스	저	고	142	중
크로아티아	저	중	63	저
이탈리아	저	고	157	중
사이프러스	저	중	34	저
라트비아	중(저)	중(저)	65	저
리투아니아	저	중	58	중
룩셈부르크	저	저	21	고
헝가리	저	고(중)	85	중
몰타	저	저(중)	46	고
네덜란드	저	저	50	중
오스트리아	저	고(중)	98	중
폴란드	저	고(중)	95	중
포르투갈	저	중(고)	74	저
루마니아	고(저)	고	106	중
슬로베니아	저	중	68	중(고)
슬로바키아	고(저)	고	96	고
핀란드	저	고	96	중
스웨덴	저	저	26	저

주 1. 전년도 보고서에서 리스크 분류가 변화된 경우 괄호 안에 전년도 보고서의 평가 결과를 표기

출처 European Commission, *Debt Sustainability Report 2024, 2025*, Table 1 & 2.,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debt-sustainability-monitor-2024_en, 검색일자: 2025. 3. 19.

- (저위험) 덴마크,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스웨덴 7개국
- (장기*) 벨기에, 룩셈부르크, 몰타, 슬로바키아는 고령화 비용 증가로 장기 리스크가 높았고, 그 외 14개국은 중간 수준의 장기 리스크로 평가
 - * 2070년까지 GDP 대비 채무 비율을 60%로 낮추기 위해 2026년에 필요한 재정 노력을 측정하는 S1지표와 장기적으로 채무를 안정화하기 위해 2026년까지 필요한 재정 노력을 측정하는 S2지표를 함께 사용하여 평가함.
- (전체)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리스크 고위험 국가는 4개국이고, 중위험은 14개국, 저위험 국가는 9개국으로 평가
- (고위험) 4개국은 공통적으로 고령화로 인한 비용 증가가 크고, 벨기에와 슬로바키아는 초기 재정 상태가 취약하여 요구되는 재정 조치가 더 많음
- (중위험) 14개국 중 체코,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리투아니아, 헝가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고령화 비용 증가), 프랑스, 폴란드, 루마니아(초기 재정 상태가 저조함), 오스트리아와 핀란드는 고령화 비용 증가와 초기 재정 상태가 저조한 점 둘 다 해당됨
- (저위험) 불가리아는 2023년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개선됨
- (추가 리스크 요인*) 대부분 국가에서 채무가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단기 채무 증가 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일부 국가들의 채무 만기 연장 등이 위험 완화 요인으로 판단됨
 - * 정량 평가를 보완하여 정성적 측면에서 채무 구조, 우발 부채, 정부 자산 및 순부채 등의 개별 특성과 제도적 요인 고려
- (위험 요인) 단기 채무 비율의 증가와 비유로지역 회원국의 외환 리스크 노출이 위험 요인으로 판단되며, 우발 부채 위험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위험 완화 요인) 일부 국가들의 채무 만기 연장, 다양한 투자자 기반의 유지, 중앙은행의 국채 보유 증가, 일부 회원국의 보유 금융 자산 증가가 위험을 완화하는 데 기여함
- ◆ EU 통계청, 2024년 4분기 경제성장률 및 고용 통계 발표(2025. 3. 7.)⁷⁾
 - (전체) 2024년 4분기 계절조정된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유로지역에서 0.2%, EU 전체에서는 0.4%(2024년 3분기에는 두 지역 모두 0.4% 성장) (표 3 참고)
 - 2024년 연간 GDP 성장률은 유로지역이 0.9%, EU는 1.0%(2023년 모두 0.4%)
 -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유로지역 1.2%, EU 1.4%(3분기 각각 1.0%, 1.1%)
 - (회원국별) 전분기 대비 아일랜드(+3.6%)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고, 덴마크(+1.6%)와 포르투갈(+1.5%) 순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았음
 - 몰타(-0.7%), 오스트리아(-0.4%), 독일·핀란드(각각 -0.2%)는 감소
 - (고용) 2024년 4분기 고용은 전분기 대비 유로지역 +0.1%, EU +0.2% 증가하였고, 2024년 연간 고용은 유로지역 +1.0%, EU +0.8% 증가(2023년 엔 각각 +1.4%, +1.2%)

7) EU 통계청, "GDP up by 0.2% and employment up by 0.1% in the euro area," 2025. 3. 7.,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07032025-ap>, 검색일자: 2025. 3. 10.

- (회원국별) 전분기와 비교하여 2024년 4분기 고용 증가율은 루마니아(+2.0%)가 가장 높았고,

스페인(+0.9%), 그리스·포르투갈(각 +0.5%) 순이었으며, 고용 감소율은 크로아티아·핀란드(-0.4%), 라트비아·스웨덴(-0.2%) 순으로 높았음

표 3 유로지역 및 EU 27개국 2024년 4분기 경제성장률(계절조정) 및 고용 증가율

(단위: %)

구분	경제성장률						고용 증가율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Q2	Q3	Q4	Q2	Q3	Q4	Q2	Q3	Q4	Q2	Q3	Q4
벨기에	0.3	0.3	0.2	0.9	1.2	1.1	0	0	0.1	0.2	0.2	0.2
독일	-0.3	0.1	-0.2	-0.2	-0.3	-0.2	0	-0.1	0	0.2	0.1	0
에스토니아	0.2	0.2	0.7	-0.7	-0.2	1.1	0.7	-1.2	0.1	1.2	0.7	0.2
아일랜드	-0.4	4.1	3.6	-3.1	3	9.2	1.4	0.8	0.3	2.7	3.6	2.5
그리스	1.2	0.4	0.9	2.1	2.3	2.6	0	0.1	0.5	1	1.1	1.4
스페인	0.8	0.8	0.8	3.3	3.5	3.5	0	0.7	0.9	1.8	1.9	2.3
프랑스	0.3	0.4	-0.1	1	1.2	0.6	0.1	0.1	0	0.6	0.5	0.4
크로아티아	1.2	0.4	1.4	3.2	4.2	3.6	1.2	1	-0.4	6.5	6.9	4.2
이탈리아	0.1	0	0.1	0.6	0.6	0.6	0.1	0.6	-0.1	1.7	2.3	1
사이프러스	0	0.9	0.3	3.4	3.6	2.9	0.4	0.5	0.3	2.1	2.2	1.7
라트비아	0	-0.2	0	0	-0.9	-0.4	-0.1	-0.6	-0.2	-0.7	-1.2	-1
리투아니아	0.4	1.1	0.8	1.6	2.6	3.7	1.4	0.6	0.4	1.9	0.8	1.7
룩셈부르크	0.6	0.2	:	-0.1	1.2	:	0.2	0.3	0.4	1.1	1.1	1.1
몰타	2.8	-0.6	-0.7	8	5	2.8	0.7	1.4	0.4	5.7	5.3	3.8
네덜란드	1.1	0.8	0.4	0.8	1.7	1.8	0.1	0.1	0.3	1.1	0.9	0.7
오스트리아	-0.4	-0.3	-0.4	-1.8	-1.3	-1.2	0	0.1	0	0	0	0
포르투갈	0.4	0.2	1.5	1.5	1.9	2.8	0.2	0.5	0.5	1.4	1.7	1.7
슬로베니아	0.1	0.4	0.6	0.9	1.3	1.1	-0.1	-0.1	-0.1	0.3	0	-0.3
슬로바키아	0.3	0.3	0.5	2	1.7	1.7	0	0	0	-0.3	-0.1	-0.2
핀란드	0.2	0.5	-0.2	-1.2	0.9	1.2	-0.3	0.2	-0.4	-1.3	-0.1	-0.8
유로지역 20개국	0.2	0.4	0.2	0.5	1	1.2	0.1	0.2	0.1	0.9	1	0.7
불가리아	0.8	0.8	0.9	2.4	2.8	3.4	0.4	0.1	0.3	1.7	0.9	1
체코	0.3	0.6	0.7	0.5	1.4	1.8	0.5	0	-0.1	0.2	0.4	0.3
덴마크	1.4	1.3	1.6	4	3.8	4.1	0.1	0.1	0.4	0.9	0.7	0.9
헝가리	-0.2	-0.6	0.5	1.2	-0.7	0.1	0	0	0.2	0.3	0.1	0.3
폴란드	1.4	0.1	1.3	3.8	2	3.7	-0.2	0	0.2	-0.6	-0.3	-0.8
루마니아	0.1	0.1	0.8	0.8	-0.1	0.7	-0.7	-3.1	2	3.7	-0.2	0
스웨덴	0.2	0.6	0.8	0.4	0.9	2.4	-0.1	-0.1	-0.2	-0.2	-0.4	-0.6
EU 27개국	0.3	0.4	0.4	0.8	1.1	1.4	0.1	0	0.2	0.9	0.8	0.5

- 주 1. 이 표의 경제성장률은 일반적으로 계절조정 및 달력효과 조정된 자료에 기초
- 2.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의 경제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퍼센트 변화는 달력효과 조정 자료로 계산
- 3. ":" 표시는 데이터 없음

출처 EU 통계청, "GDP up by 0.2% and employment up by 0.1% in the euro area," 2025. 3. 7.,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07032025-ap>, 검색일자: 2025. 3. 10.

◆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 하향 조정(2025. 3. 6.)⁸⁾

- (정책금리) 3월 12일부터 세 가지 주요 금리를 각각 0.25%p 하향 조정
 - 기준금리 2.90% → 2.65%, 한계대출금리 3.15% → 2.90%, 수신금리 2.75% → 2.50%로 인하⁹⁾
- ▶ 2024년 6월부터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¹⁰⁾하여 정책금리를 여섯 차례 인하하였음(표 4 참고)
- 이러한 정책금리 인하 결정은 물가상승률 전망과 근원 물가상승률, 통화정책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함
- ▶ 소비자물가상승률(headline Inflation)은 2025년 2.3%, 2026년 1.9%, 2027년 2.0%로 전망

- ▶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2025년 2.2%, 2026년 2.0%, 2027년 1.9%로 예상
- (경제) 유로지역 경제는 2024년 4/4분기에 완만한 성장세를 보임
 -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5년 0.9%, 2026년 1.2%, 2027년 1.3%로 하향 조정¹¹⁾하였으며, 2025년과 2026년의 하향 조정은 수출 감소와 지속적인 투자 약세를 반영함
- (물가) 물가상승률은 2024년 12월 2.4%, 2025년 1월 2.5%, 2월 2.3%로 전월 대비 0.2%p 감소¹²⁾
- (평가) 경제 성장은 여전히 하방 위험이 있으며, 글로벌 무역 마찰이 증가함에 따라 유로지역 물가상승률 전망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표 4 EU 정책금리 변화 경로

(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월	3월	5월	6월	7월	9월	12월	1월	6월	9월	10월	12월	2월	3월
기준금리	3.00	3.50	3.75	4.00	4.25	4.50	4.50	4.50	4.25	3.65	3.4	3.15	2.90	2.65
한계대출금리	3.25	3.75	4.00	4.25	4.50	4.75	4.75	4.75	4.50	3.90	3.65	3.40	3.15	2.90
기준금리 및 한계대출금리 변동폭(%p)	+0.5	+0.5	+0.25	+0.25	+0.25	+0.25	-	-	-0.25	-0.6	-0.25	-0.25	-0.25	-0.25
수신금리	2.50	3.00	3.25	3.50	3.75	4.00	4.00	4.00	3.75	3.50	3.25	3.00	2.75	2.50
변동폭(%p)	+0.5	+0.5	+0.25	+0.25	+0.25	+0.25	-	-	-0.25	-0.25	-0.25	-0.25	-0.25	-0.25

출처 유럽중앙은행, "Key ECB interest rates," https://www.ecb.europa.eu/stats/policy_and_exchange_rates/key_ecb_interest_rates/html/index.en.html, 검색일자: 2025. 3. 10.

8) 유럽중앙은행(ECB),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5. 3. 6.,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5/html/ecb.mp250306-d4340800b3.en.html>, 검색일자: 2025. 3. 10.
 _____, "Monetary policy statement Press conference," 2025. 3. 6., https://www.ecb.europa.eu/press/press_conference/monetary-policy-statement/2025/html/ecb.is250306-4307bd0941.en.html, 검색일자: 2025. 3. 10.

9) 기준금리(Main Refinancing Operations)는 은행이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이고, 한계대출금리(Marginal Lending Facility)는 은행이 하루 동안 유럽중앙은행에 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이며, 수신금리(Deposit Facility)는 은행이 하루 동안 유럽중앙은행에 예치 시 적용받는 금리(유럽중앙은행, "Key ECB interest rates," https://www.ecb.europa.eu/stats/policy_and_exchange_rates/key_ecb_interest_rates/html/index.en.html, 검색일자: 2025. 3. 10.)

10) 유럽중앙은행(ECB)은 2022년 7월 기준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하였고 1년 11개월 만에 피벗(pivot)으로 금리 인하 결정

11) 지난 2024년 12월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경제 회복이 느릴 것으로 예상(2025년 1.1%, 2026년 1.4%, 2027년 1.3%)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4.12.12.,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4/html/ecb.mp241212-2acab6e51e.en.html>, 검색일자: 2025. 3. 13.)

12) 유럽중앙은행(ECB), "Inflation and consumer prices," https://www.ecb.europa.eu/stats/macroeconomic_and_sectoral/hicp/html/index.en.html, 검색일자: 2025. 3. 25.

- ◆ EU 집행위원회, 유럽 방위 백서¹³⁾ 및 재무장(ReArm) 계획 발표(2025. 3. 19.)
- EU 집행위와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2030년을 기점으로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유럽 방위태세(Readiness 2030)” 로드맵에 따른 방위 백서를 발표하고, EU 집행위는 투자 패키지인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Readiness 2030) 제언¹⁴⁾
- (방위 백서) 지난 몇 년간 유럽 방위 투자 및 지출 부족에 대응하여 회원국별 방위 역량 격차를 해소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안보·방위 강화 및 방위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7개 핵심 방안을 제시함
 - ① 회원국들이 지정한 핵심 전략 분야에 집중하면서 국가별 방위 역량 격차 해소 ② 공동 조달을 통해 유럽 방산 산업의 경쟁력 제고 ③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강화 및 유럽 -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 연계 강화 ④ 규제 개선을 통해 EU 단위 방위 시장 통합 촉진 ⑤ 인공지능 및 양자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방위 역량 혁신 ⑥ 최악 시나리오에 대비한 준비 태세 향상(군사 기동성, 전략 물자 비축, 국경 강화) ⑦ 전략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방위 협력 확대
- (재무장(ReArm) 계획) EU 집행위는 세 가지 핵심 축을 통해 총 8,000억유로 이상의 방위 투자 패키지를 제안함
 - ① 회원국 방위 지출 확대)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재정준칙을 준수하면서 회원국들이 재정 여력을 갖추도록 조건* 충족 시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예외 조항인 국가면책조항¹⁵⁾

13) 방위 백서 및 재무장 계획 관련 논의 동향은 다음과 같음

- 2022년 3월 10~11일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에 비추어 “유럽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로 약속함
-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2024년 9월에 발표한 「유럽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들이 방위 물품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EU 내 방위 산업을 우선시하고, 공동 조달 및 연구 개발(R&D) 지출을 확대할 것을 권고함
- 2025년 3월 6일 유럽 이사회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과 유럽 및 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유럽 연합에 대한 실존적 도전”이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미국의 역할을 줄이고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함
- 2025년 3월 19일 EU 집행위는 “유럽 방위 백서 및 재무장 계획/준비 2030”을 발표함
- 백서 발표 이후, 국방 지출에 관해 안정성장협약의 국가면책조항 적용을 원하는 회원국은 2025년 4월말까지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EU 이사회 조정을 통해 회원국 공동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EU 집행위는 접수된 요청을 신속하게 평가하고 6월에 이사회 권고안을 채택하며 7월 이사회에서 최종 채택을 준비할 예정 (EU 집행위원회,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establishing the Security Action for Europe (SAFE)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European defence industry Instrument,” 2025. 3. 19., https://defence-industry-space.ec.europa.eu/document/download/6d6f889c-e58d-4caa-8f3b-8b93154fe206_en?filename=SAFE%20Regulation.pdf, 검색일자: 2025. 4. 1.); EU 집행위원회,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Report by Mario Draghi,” September 2024; EU 집행위원회,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establishing the Security Action for Europe (SAFE)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European defence industry Instrument,” 2025. 3. 19., https://defence-industry-space.ec.europa.eu/document/download/6d6f889c-e58d-4caa-8f3b-8b93154fe206_en?filename=SAFE%20Regulation.pdf, 검색일자: 2025. 4. 1.); EU 집행위원회, “Commission unveils the White Paper for European Defence and the ReArm Europe Plan/Readiness 2030,” 2025. 3. 19.,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793, 검색일자: 2025. 4. 1.); EU 집행위원회,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Accommodating increased defence expenditure within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2025. 3. 19., https://defence-industry-space.ec.europa.eu/document/download/a57304ce-1a98-4a2c-aed5-36485884f1a0_en?filename=Communication-on-the-national-escape-clause.pdf, 검색일자: 2025. 4. 1.)

14) EU 집행위원회, “Commission unveils the White Paper for European Defence and the ReArm Europe Plan/Readiness 2030,” 2025. 3. 19.,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793, 검색일자: 2025. 3. 21.

- _____, “Acting on defence to protect Europeans,” 2025. https://commission.europa.eu/topics/defence/future-european-defence_en, 검색일자: 2025. 3. 21.
- _____, “JOINT WHITE PAPER for European Defence Readiness 2030,” 2025. 3. 19., https://defence-industry-space.ec.europa.eu/document/download/30b50d2c-49aa-4250-9ca6-27a0347cf009_en?filename=White%20Paper.pdf, 검색일자: 2025. 3. 21.
- _____, “Questions and answers on ReArm Europe Plan/Readiness 2030,” 2025. 3. 19.,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5_790, 검색일자: 2025. 3. 25.

15) 국가면책조항(the National Escape Clause: NEC)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하는 일반면책조항(the General Escape Clause)과 다르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i) 회원국이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 있음, ii)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은 해당 회원국의 공공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침, iii) 국가면책 조항에 따른 이탈은 장기적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지 않아야 함.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Accommodating increased defence expenditure within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box 1’, 2025. 3. 19., https://defence-industry-space.ec.europa.eu/document/download/a57304ce-1a98-4a2c-aed5-36485884f1a0_en?filename=Communication-on-the-national-escape-clause.pdf, 검색일자: 2025. 3. 25.)

적용을 허용함

* EU 재정지출 가능별 분류상 방위 지출 항목 증가만 가능하고, 연간 최대 GDP의 1.5%까지, 최장 4년간 가능

- ② 유럽안보조치(Security Action for Europe, SAFE) 도입) EU 예산 여유 재원을 담보로 최대 1,500억유로를 조달하여 방위 투자를 지원하며,

대출 형태로 요청 국가에 지급¹⁶⁾

- ③ 민간 자본 동원) 유럽투자은행이 방위·안보 프로젝트로 대출 범위를 확대토록 하고, 2025년 3월 EU 집행위가 추진 발표한 저축투자연합¹⁷⁾이 방위 산업 등 투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OECD

- ◆ OECD, 2025년 중간경제전망보고서 발표(2025. 3. 17.)¹⁸⁾
- (현황) 지난해 세계 경제는 회복력을 유지하며 2024년 연간 3.2%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음. 이는 실질 소득 증가와 저금리가 요인이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 지출 둔화, 소비자 신뢰 부진, 대외 수요 변동 등으로 인해 이러한 추세가 상쇄
- 최근 지표들에 따르면 글로벌 성장 전망이 완화되기 시작하였음.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 및 소비자

심리가 약화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

- (경제전망) 세계 GDP 성장률은 2024년 3.2%에서 2025년 3.1%, 2026년 3.0%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러 G20 경제권에서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정책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와 가계 지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표 5 참조)
- (미국) 연간 GDP 성장률은 2025년 2.2%, 2026년 1.6%로 최근의 강세 속도 둔화 예상

16) 집행위원회가 이사회에 제안한 유럽안보조치(SAFE)는 회원국이 유럽 방위 기술 및 산업에 대하여 신속하게 공공 투자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출 형태로 재정 지원을 하는 금융 수단임
 - 최소 2개국 이상이 공동으로 방위 제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최대 1,500억유로 규모에서 시장금리 대비 우대 적용한 이자와 대출기간의 혜택(최대 45년)으로 대출금을 지원함
 - 대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된 EU 채권은 회원국 국민총소득(GNI)의 1.4%를 초과할 수 없는 한도에 따라 EU 예산 본부에서 보증함
 - 긴급 조달과 장기적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미사일, 탄약, 드론, AI 무기체계 등 우선품목을 정하고 지원하며 이러한 공공조달 제품은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함
 - 신청 국가는 유럽 방위산업 투자 계획(European Defence Industry Investment Plan)을 제출해야 하며, 집행위원회가 계획의 전략성, 부합성,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여 자금 지원을 승인함
 (EU 집행위원회,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establishing the Security Action for Europe (SAFE)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European defence industry Instrument," 2025. 3. 19., https://defence-industry-space.ec.europa.eu/document/download/6d6f889c-e58d-4caa-8f3b-8b93154fe206_en?filename=SAFE%20Regulation.pdf, 검색일자: 2025. 3. 27.)

17) 저축투자연합(Savings and Investments Union)은 EU의 금융시스템 개선을 통해 민간 저축이 생산성이 높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가계의 자본시장 투자를 장려하고, 투자 조달 환경을 개선하며, 금융시장의 통합 등을 추진(EU 집행위, Savings and investments union, https://finance.ec.europa.eu/regulation-and-supervision/savings-and-investments-union_en, 검색일자: 2025. 4. 2.)

18) OECD (2025),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ch 2025: Steering through Uncertainty," 2025. 3. 17, <https://doi.org/10.1787/89af4857-en>. 검색일자: 2025. 3. 18.

- (유로존) 지정학적 및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성장세가 억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2025년 1.0%, 2026년 1.2%로 예상
- (중국)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정책 지원의 효과가 대부분 상쇄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4.8%에서 2026년 4.4%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한국) 2025년 1.5%로 이전 전망 수준(2.1%, 24년 12월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며 2026년 2.2%로 전망
- (인플레이션 전망) 많은 경제권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headline inflation)이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다시 상승하고 있음
- G20 경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headline inflation)은 2025년 3.8%에서 2026년 3.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근원물가상승률(core inflation, 식료품·에너지 제외)은 2026년에도 증양은행 목표치를

표 5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p)

구분	2024	2025		2026	
		중간경제전망	24년 12월 전망 대비 차이	중간경제전망	24년 12월 전망 대비 차이
세계	3.2	3.1	-0.2	3.0	-0.3
G20 ¹⁾	3.3	3.1	-0.2	2.9	-0.3
호주	1.1	1.9	0.0	1.8	-0.7
캐나다	1.5	0.7	-1.3	0.7	-1.3
유로 존	0.7	1.0	-0.3	1.2	-0.3
독일	-0.2	0.4	-0.3	1.1	-0.1
프랑스	1.1	0.8	-0.1	1.0	0.0
이탈리아	0.7	0.7	-0.2	0.9	-0.3
스페인 ²⁾	3.2	2.6	0.3	2.1	0.1
일본	0.1	1.1	-0.4	0.2	-0.4
한국	2.1	1.5	-0.6	2.2	0.1
멕시코	1.5	-1.3	-2.5	-0.6	-2.2
튀르키예	3.2	3.1	0.5	3.9	-0.1
영국	0.9	1.4	-0.3	1.2	-0.1
미국	2.8	2.2	-0.2	1.6	-0.5
아르헨티나	-1.8	5.7	2.1	4.8	1.0
브라질	3.4	2.1	-0.2	1.4	-0.5
중국	5.0	4.8	0.1	4.4	0.0
인도 ³⁾	6.3	6.4	-0.5	6.6	-0.2
인도네시아	5.0	1.9	-0.3	5.0	-0.1
러시아	4.1	1.3	0.2	0.9	0.0
사우디아라비아	1.2	3.8	0.2	3.6	-0.2
남아프리카공화국	0.6	1.6	0.1	1.7	0.0

주 1. 유럽연합은 G20의 회원국이지만, G20 집계에는 자체적으로 회원국인 국가만 포함됨
 2. 스페인은 G20의 영구 초대국(permanent invitee)
 3.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ch 2025," p. 5, Table1.

-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위험) 현재 높은 수준의 지정학적 및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경제 성장에 대한 하방 압력이 가중되면, 금융시장의 급격한 가격 재조정과 시장 변동성의 추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음
 - 무역장벽이 높아지면 기업투자를 약화시키고, 세계교역량을 감소시키는 등 전 세계적으로 성장에 타격을 주고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위험
 - 현재 많은 국가들의 경우 타이트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물가가 급등하면 명목임금 증가로 인플레이션 발생이 우려
 - (정책권고) 불확실성 증가와 미래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 및 재정정책이 필요하며, 무역장벽으로 인한 압력은 생산성을 강화하는 정책개혁과 지속적인 국제협력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
 - (통화정책) 최근 몇 달 동안 대부분의 주요 경제국에서 정책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무역 비용이 높아져 임금 및 물가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앙은행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
 - (재정정책) 정부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고령화로 인한 대규모 지출,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대응, 국방지출 강화 등 미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 조치가 필요함
 - ▶ 무역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해결책이 요구됨. 지속적으로 조치가 없을 경우 정부부채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 중기 조정 경로(medium-term adjustment paths) 내에서 지출 억제, 재분배, 수익 증대 등의 노력이 필수적
 - (국제협력과 구조적 정책개혁) 보호무역주의의 증가, 지정학적 불확실성, 성장둔화 전망 우려로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 간 보복적으로 무역장벽을 크게 높이지 않도록 지속적인 국제협력이 필요
 - ▶ 기업이 공급업체와 구매자를 모두 다각화하고 기업 진입에 대한 과도한 규제부담을 줄이며, 국가간 무역 및 자원흐름에 대한 규제장벽을 줄이는 등의 개혁이 필요
 - ▶ 정부는 고속 디지털 인프라의 가용성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
- ◆ OECD, 글로벌 부채보고서(Global Debt Report) 제 2판 발표(2025. 3. 20.)¹⁹⁾
- (개요) ‘글로벌 부채보고서’(제2판)에서는 2024년 말까지의 글로벌 국채 및 기업 부채시장의 최신동향 분석과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의 국채차입 현황을 살펴보고, 부채시장(debt markets)이 기후 전환 자금지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함
 - (부채규모 현황 및 전망) 몇몇 주요 국채 수익률은 정책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반면, 국가부채와 기업 부채는 모두 증가. 이러한 높은 부채 수준과 높은 차입 비용과 더불어 지정학적 및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채권시장에서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19) OECD, *Global Debt Report 2025: Financing Growth in a Challenging Debt Market Environment*,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8ee42b13-en>. 검색일자: 2025. 3.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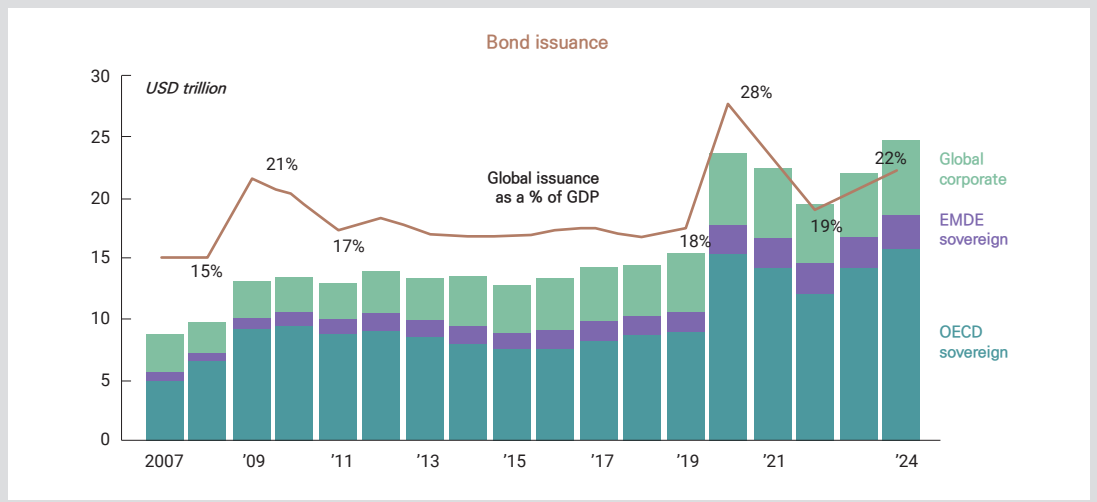
- 정부와 기업들은 2024년에 전 세계 시장에서 25조달러를 신규로 차입했으며, 이는 2007년의 거의 세 배에 달하는 금액에 해당
-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지원을 부채시장을 통하여 조달하였고, 엄격한 은행규칙과 규제로 기업들이 채권시장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 것에 기인
- 2024년 기준으로 전세계 총국채와 회사채 부채는 100조달러를 넘어서고 있음
- ▶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총액)은 2023년 82% (54조달러)에서 2024년 84%(55조달러), 2025년에는 85%(59조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2007년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
- OECD 회원국의 신규 국채 발행 규모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정점을 찍고 난후, 2022년 12조달러로 감소한 후 2023년 14조달러, 2024년 16조달러,

2025년에는 17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그림 1 참고)

- (차입비용 상승으로 인한 위험) 현재 미지급 부채의 금리는 과거 저금리 시기에 발행되어 만기 도래 시 높은 금리로 채용자에게 되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향후 3년 이내에 총국채의 42%와 전체 회사채 채권의 38% 만기 도래 예상. OECD 회원국의 국채 중 약 45%가 2027년까지 만기 도래 예정
- 2024년 OECD 회원국의 약 3분의 2에서 GDP 대비 정부 이자 지급비율이 총 3.3%에 달함
- 2008년 이후 기업 채권 발행은 급증했지만, 기업 투자 성장은 둔화
- (부채시장의 변동성 증가) 중앙은행들은 2024년에도 양적 긴축을 지속하면서 부채시장에서 철수하고 있어 투자자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으며, 해외

그림 1 2024년 국가 및 기업 차입 현황

(단위 : 조달러)



주 EMDE(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는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에 해당

출처 OECD, OECD Global Debt Report 2025. p. 15, Infographic 1

- 투자 수요 지속 여부는 국제 금융 흐름 및 지정학적 긴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변동성 확대 위험
- OECD 회원국에서 중앙은행의 국내 국제보유율이 2021년 29% → 2024년 19%로 감소, 같은 기간 가계(5% → 11%)와 외국인 투자자(29% → 34%)의 비중이 증가
- (넷제로(Net-Zero)²⁰⁾ 전환과 투자 확대 필요성) 넷제로 달성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대규모 투자 증가가 필요하나, 높은 부채와 이자 비용으로 재정부담이 커질 가능성 우려
- 공공 부문 주도 시 2050년까지 선진국에서는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이 25%P, 중국 41%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흥시장(중국 제외)에서는 2040년까지 16%P 상승 예상
- (부채시장 활용의 전략적 접근 필요) 부채 조달 비용 증가로 양질의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재정건전성 유지와 성장촉진을 위한 구조개혁 및 공공지출 효율성 증대 노력이 필요
-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화, 국방비 증가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채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정부는 기업이 생산성 향상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 공공 부문만으로는 기후 전환자금을 지원할 수 없으므로, 민간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자본시장의 빠른 발전이 필요. 특히, 신흥시장에서 부채시장의 자금지원 잠재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자본시장 개발에 금융규제 개혁은 필수적임



미국

예산·결산 등

- ◆ 미 의회, 2025회계연도 3차 임시 세출예산법안 (Continuing Resolution; H.R. 1968; P.L. 119-4) 통과의결(2025. 3. 14.)^{21) 22)}
- (배경) 현재 진행 중인 2025회계연도(2024. 10.~2025. 9.)에 대한 정부 운영은 2회에 걸친 임시 세출예산으로 운영 중
- (1차) 2025회계연도 1차 임시예산(P.L. 118-83): 효력 기한(~2024. 12. 20.)

20) '넷제로(Net-Zero)'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말하며 탄소중립 이라고도 함(출처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https://www.2050cnc.go.kr/base/contents/view?contentsNo=9&menuLevel=2&menuNo=11>, 검색일자: 2025. 3. 24.)

21)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Committee Releases Bill to Keep Government Open, Working for the American People," 2025. 3. 8.,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committee-releases-bill-keep-government-open-working-american-people>, 검색일자: 2025. 3. 14.

22)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Cole Floor Remarks on H.R. 1968, the Full-Year Continuing Appropriations and Extensions Act, 2025," 2025. 3. 11.,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remarks/cole-floor-remarks-hr-1968-full-year-continuing-appropriations-and-extensions-act-2025>, 검색일자: 2025. 3. 21.

- (2차) 2025회계연도 2차 임시예산(P.L. 118-158): 효력 기한(~2025. 3. 14.)
- (주요 내용 및 예산 규모) 동 임시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준하는 예산 규모로 운영되며, 총 추정 비용은 1조 8,459억달러²³⁾
- (만료 시한) 2025회계연도의 잔여기간(약 5개월) 전체에 대해 규정하였기에 동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2025. 9. 30.)까지 효력 지속

기타

- ◆ 미 감사원(GAO), Improper Payments 연례보고서 발표(2025. 3. 11.)²⁴⁾
- (배경) 감사원은 Payment Integrity Information Act(PIIA)²⁵⁾ 26) of 2019에 근거하여 부적절 지급 관리, 위험 식별, 시정 조치 등을 하며,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부적절 지급에 대한 추정 규모 및 관련 내용 등을 공개

그림 2 FY2003~FY2024 행정부 부적절 지급 추정 규모

(단위: 십억달러, 회계연도)



출처 GAO, "Improper Payments: Information on Agencies' Fiscal Year 2024 Estimates," 2025.3.11.

23) CBO, "H.R. 1968, Full-Year Continuing Appropriations and Extensions Act, FY2025," 2025. 3. 11., <https://www.cbo.gov/publication/61248>, 검색일자: 2025. 3. 21.

24) GAO, "Improper Payments: Information on Agencies' Fiscal Year 2024 Estimates," 2025. 3. 11., <https://www.gao.gov/assets/gao-25-107753.pdf>, 검색일자: 2025. 3. 21.

25) P.L. 116-117

26) 기존에는 부적절 지급에 대한 규정을 제시한 법인 Improper Payments Information Act of 2002(P.L.107-300)에 근거하여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나, 동 법은 Payment Integrity Information Act of 2019(P.L. 116-117)에 흡수 통합됨

- (주요 내용) 2024회계연도에 발생한 부적절 지급 규모²⁷⁾는 1,620억달러(전년 대비 31.5% 감소*)로 추정되며, 2003~2024회계연도까지의 부적절 지급 누적 규모는 약 2.8조달러로 추정

* 부적절 지급의 감소는 특정 코로나19 프로그램의 축소(wind-down) 및 종료(termination)에 주로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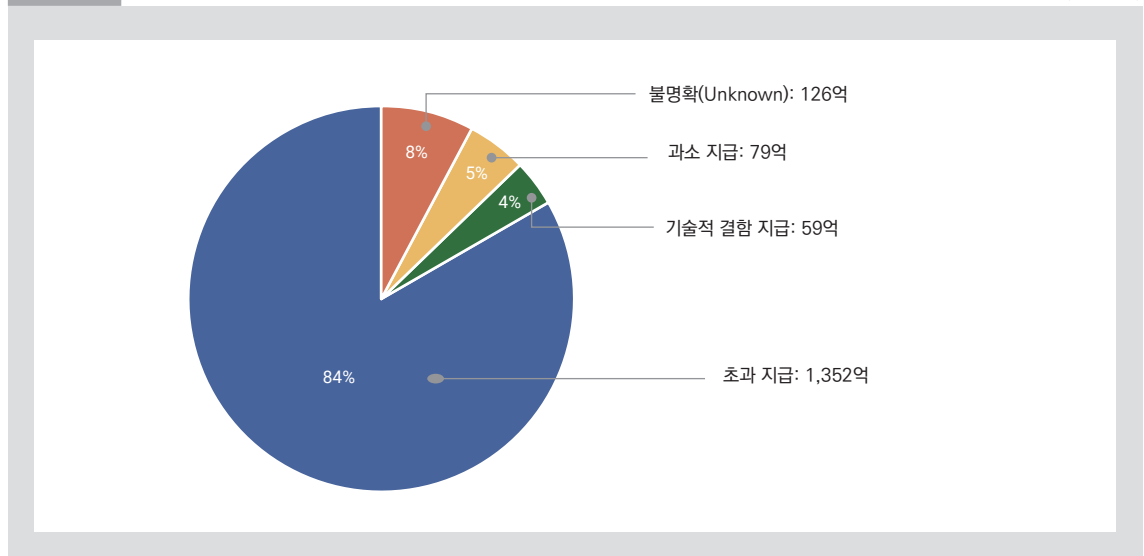
- (부적절 지급 주요 분야) 전체 부적절 지급 규모 중 5개 프로그램이 75%(약 1,210억달러)를 차지
- ▶ (부적절 지급 주요 분야별 규모) ①보건복지부의 메디케어(540억달러) ②보건복지부의 메디케이드(310억달러)

③재무부의 근로장려세제(EITC)(160억달러) ④농무부(USDA)의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²⁸⁾(SNAP)(110억달러) ⑤중소기업청(SBA)의 레스토랑 회복 기금²⁹⁾(90억달러)

- (부적절 지급 유형) 초과 지급(84%), 불명확(unknown)³⁰⁾(8%), 과소 지급(5%), 기술적 결함 지급³¹⁾(4%) 등으로 구성
- (향후 조치 전망) 부적절 지급 지적을 받은 기관들은 부적절 지급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향후 이행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그림 3 FY2023 연방기관의 부적절 지급의 유형별 구분 및 규모

(단위: 달러)



출처 GAO, "Improper Payments: Information on Agencies' Fiscal Year 2024 Estimates," 2025. 3. 11.

27) 본 보고서는 부적절한 지출 추정치는 정부 전체(government-wide)의 부적절한 지출 규모를 완전히(full extent)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2024 회계연도의 부적절한 지출 총 추정치는 연방 정부 프로그램 중 일부에 해당하는 소규모 하위 집합(small subset)에 불과함을 명시하고 있음(예, 일부 기관이 상당한 부적절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보건복지부(HHS)의 저소득가족 일시지원(TANF)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에는 부적절한 지출을 추정하지 않고 있음)

28) 푸드 스탬프(Food Stamp)로 불리고 있음

29)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식당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연방 지원 기금으로 총 기금 규모는 286억달러(참고자료: GAO,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 Opportunities Exist to Improve Oversight," 2022. 7. 14.)

30) "unknown" 개념 원문 표현: "Unknown payments" are those that a program cannot determine were either proper or improper

31) technically improper payments: 자격 대상이 아닌 자가 수혜를 받았거나, 법적 절차 및 규칙 등을 어긴 지급 등을 의미

◆ 트럼프 대통령, 공식 임기 시작 이후 다수의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 등 정책 조치 이행(2025. 2. 26.~3. 25.)

- (주요 대통령 조치) 베네수엘라 관련 관세 부과,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 상향 조정, 멕시코·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 조정, 연방 관료제 축소 등
-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국에 대한 관세 부과)³²⁾ 베네수엘라산 석유³³⁾(직접 또는 간접³⁴⁾ 수입 포함)를 수입하는 국가로부터의 모든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2025. 4. 2.~)하는 행정명령에 서명(2025. 3. 24.)

* 해당 관세는 기존 관세 외에 추가로 부과

- ▶ (관세 부과 이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미국의 국가안보 등에 이례적인 중대한 위협* 존재

* (행정명령에 명시된 중대한 위협) ①마두로 정권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억압(suppression)을 통한 민주주의 제도 붕괴, ②만연한(endemic) 경제 부실 관리 및 공공 부패, ③인도주의

및 공중보건 위기 악화, ④강제 이주(forced migration)로 인한 지역 불안정화

- (중국 수입품 관세율 상향 조정)³⁵⁾ 중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10% 추가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관세율 상향(10% → 20%) 조정³⁶⁾
- (멕시코·캐나다³⁷⁾에 대한 관세 조정) 미국 자동차 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유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명시된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 품목은 2025년 3월 7일부터 면제 조치 실시(2025. 3. 6. 발표)^{38) 39)}
- (연방 관료제 추가 축소)⁴⁰⁾ 불필요한 정부기관 최대 폐지 또는 최소한의 기능과 인력만 유지(소수 민족기업개발청,⁴¹⁾ 연방노숙자해결협의회⁴²⁾ 등 총 7개 기관

32) 백악관, "Imposing Tariffs on Countries Importing Venezuelan Oil," 2025. 3. 24.,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3/imposing-tariffs-on-countries-importing-venezuelan-oil/>, 검색일자: 2025. 3. 25.

33) "베네수엘라산 석유"란 베네수엘라에서 추출 정제·수출된 원유 및 석유 제품을 의미

34) "간접적"이란 제3국을 경유하거나 중개인을 통한 수입 등, 석유의 출처가 베네수엘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상무부 판단)를 포함

35) 백악관,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Executive Order," 2025. 2. 1.,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imposing-duties-to-address-the-synthetic-opioid-supply-chain-in-the-peoples-republic-of-china/>, 검색일자: 2025. 2. 24.

36) 백악관, "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5. 3. 3.,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3/further-amendment-to-duties-addressing-the-synthetic-opioid-supply-chain-in-the-peoples-republic-of-china/>, 검색일자: 2025. 3. 20.

37)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추가관세 부과 후 유예 조치 실시

38) 백악관, "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SOUTHERN BORDER," 2025. 3. 6.,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3/amendment-to-duties-to-address-the-flow-of-illicit-drugs-across-our-southern-border/>, 검색일자: 2025. 3. 11.

39) 백악관, "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2025. 3. 6.,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3/amendment-to-duties-to-address-the-flow-of-illicit-drugs-across-our-northern-border-0c3c/>, 검색일자: 2025. 3. 11.

40) 백악관, "CONTINUING THE REDUCTION OF THE FEDERAL BUREAUCRACY," 2025. 3. 14.,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3/continuing-the-reduction-of-the-federal-bureaucracy/>, 검색일자: 2025. 2. 26.

41) 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 (MBDA),

42) United States Interagency Council on Homelessness (USICH)



일본

◆ 일본 재무성, 2025회계연도 국민부담률* 전망 발표 (2025. 3. 5.)⁴³⁾

$$* \text{국민부담률} = \frac{(\text{국세} + \text{지방세}) + \text{사회보장부담}}{\text{국민소득}(NI)} \quad 44)$$

$$* \text{잠재 국민부담률} = \frac{(\text{국세} + \text{지방세}) + \text{사회보장부담} + \text{재정적자}}{\text{국민소득}(NI)}$$

- 2025회계연도 국민부담률(국민소득 대비)은 2024년 45.8%(실적 전망치)보다 0.4%p 증가한 46.2%로 전망
- 국민부담률에 재정적자⁴⁵⁾를 고려한 ‘잠재 국민부담률’은 2024년 50.9%(실적 전망치)보다 2.1%p

감소한 48.8%로 전망

- 다른 국가와 비교한 국민부담률(국민소득 대비)은 2022년 기준 일본은 48.4%, 미국은 36.4%, 영국은 49.7%이며, 독일은 55.9%, 스웨덴은 55.5%, 프랑스는 68.1%로 나타남

◆ 일본 내각부, 2024년 4분기 GDP 2차 속보치 발표 (2025. 3. 11.)⁴⁷⁾

- 2024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계절조정)은 0.6%(연율 2.2%), 명목 GDP 성장률은

표 6 국민부담률(국민소득 대비) 추이

(단위: %)

구분	국세 ¹⁾	지방세	조세부담 ⁴⁷⁾	사회보장부담	국민부담률	재정적자 ²⁾	잠재 국민부담률
	①	②	③=①+②	④	⑤=③+④	⑥	⑦=⑤+⑥
2020	17.3	10.9	28.1	19.6	47.7	14.9	62.7
2021	18.2	10.7	28.9	19.2	48.1	9.2	57.4
2022	18.6	10.8	29.4	19.0	48.4	6.3	54.6
2023	17.7	10.2	27.9	18.2	46.1	4.0	50.0
2024	17.5	10.1	27.5	18.3	45.8	5.0	50.9
2025	18.1	10.1	28.2	18.0	46.2	2.6	48.8

- 주 1) 국세에는 특별회계 및 일본전매공사 납부금을 포함. 지방법인 특별세 및 특별법인 사업세는 국세에 포함함
 2) 재정적자는 국가 및 지방의 재정수지 적자로 일시적인 특수요인을 제외한 수치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
 2. 2023회계연도까지는 실적치, 2024회계연도는 실적 전망치, 2025회계연도는 전망치

출처 일본 재무성, 「国民負担率(对国民所得比)の推移」, 2025.3.5., 표 일부 발췌

43) 일본 재무성, 「令和7年度の国民負担率を公表します」, <https://www.mof.go.jp/policy/budget/topics/futanritsu/20250305.html>, 검색일자: 2025. 3. 19.
 44) 국민소득 NI는 국내에서 발생한 고용자 보수, 영업잉여·혼합소득에 해외로부터의 고용자 보수, 재산소득의 순수취분을 가산한 금액을 의미,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kakuhou/files/h16/pdf/usage.pdf, 검색일자: 2025. 3. 27.
 45) 재정적자는 국가 및 지방의 재정수지 적자를 의미하며, 일시적인 특수요인을 제외한 수치, 출처: 일본 재무성, 「国民負担率(对国民所得比)の推移」, 2025. 3. 7., <https://www.mof.go.jp/policy/budget/topics/futanritsu/sy202503a.pdf>, 검색일자: 2025. 3. 19.
 46) 조세부담률의 항목은 개인소득 과세, 법인소득 과세, 소비 과세, 자산 과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47) 일본 내각부, 「2024年10-12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25. 3. 11...: https://www.esri.cao.go.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검색일자: 2025. 3. 21.

- 1.1%(연율 4.6%)로 1차 속보치⁴⁸⁾에서 하향 조정
- (내외수요 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 수요(내수) 기여도는 -0.2%p로, 민간최종소비지출의 하향 조정 등에 기인하여 1차 속보치(-0.1%p)에서 하향 조정되었으며, 재화·서비스 순수출(외수)의 기여도는 0.7%p로, 1차 속보치와 동일
- (민간수요) 민간수요 증가율(전분기 대비, 계절조정)은 -0.3%로, 1차 속보치(-0.1%)에서 하향 조정
- ▶ 민간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은 0.0%로, 1차 속보치(0.1% 증가)에서 하향 조정되었으며, '서비스산업동향조사(12월)' 등의 반영에 따라 외식 등 서비스 항목이 하향 조정에 기여
- ▶ 민간주택 증가율은 -0.2%로, 각종 기초 통계의 추가 등에 따라 1차 속보치(0.1% 증가)에서 하향 조정
- ▶ 민간기업설비 증가율은 0.6%로, 1차 속보치(0.5% 증가)에서 상향 조정되었으며, '특정 서비스산업동향통계(12월)' 등의 반영에 따라 소프트웨어 등 공통 추정 항목이 상향 조정에 기여
- ▶ 민간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0.3%p로, 1차 속보치(-0.2%p)에서 하향 조정되었으며, '석유통계(12월)' 등의 반영에 따라 원재료 재고가 하향 조정에 기여
- (공적수요) 공적수요 증가율(전분기 대비, 계절조정)은 0.1%로 1차 속보치와 동일
- ▶ 정부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은 0.4%로, 각종 기초 통계의 추가 등에 따라 1차 속보치(0.3% 증가)에서 상향 조정
- ▶ 공적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0.7%로, '건설종합통계(12월)' 등의 반영에 따라 1차 속보치(-0.3%)에서 하향 조정
- ▶ 공적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0.0%p로, 1차 속보치와 동일
- (재화·서비스 수출입) 재화·서비스 수출 증가율(전분기 대비, 계절조정)은 1.0%로, 수출 디플레이터의 상향 조정에 따라 1차 속보치(1.1% 증가)에서 하향 조정되었으며, 수입 증가율은 1차 속보치와 동일
-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전분기 대비, 계절조정)은 0.6%로, 1차 속보치(0.6% 증가)와 동일

표 7 국민부담률 국제비교

(단위: %)

구분	일본(2025년)	일본(2022년)	미국(2022년)	영국(2022년)	독일(2022년)	스웨덴(2022년)	프랑스(2022년)	한국(2022년)
사회보장부담률	18.0	19.0	8.6	12.0	22.8	5.0	23.8	13.1
조세부담률	28.2	29.4	27.8	37.8	33.1	50.5	44.3	31.7
국민소득 대비 재정적자	2.6	6.3	4.7	6.2	2.9	0.0	6.8	-
국민부담률	46.2	48.4	36.4	49.7	55.9	55.5	68.1	44.8
(GDP 대비)	(34.0)	(34.9)	(27.9)	(37.0)	(41.4)	(37.0)	(47.7)	(31.3)
잠재 국민부담률	48.8	54.6	41.1	55.9	58.8	55.5	74.8	-
(GDP 대비)	(35.9)	(39.5)	(31.5)	(41.6)	(43.6)	(37.0)	(52.4)	-

- 주 1. 일본(2025년)은 전망치, 2022년은 모든 국가가 실적치
 2. 재정수치는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기준. 단 일본은 사회보장기금, 미국은 사회보장연금신탁기금을 제외
 3. 표에 기재되어 있는 - 표시는 일본 공식자료에 없음을 의미

원출처 동 수치는 일본의 경우 일본 내각부 「국민경제계산」자료 등, 미국은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그 외 국가들은 National Account(OECD), Revenue Statistics(OECD), Economic Outlook 116(OECD) 2024년 12월 자료를 사용

출처 일본 재무성, 「国民負担率の国際比較」, 2025. 3. 5., <https://www.mof.go.jp/policy/budget/topics/futanritsu/sy202503b.pdf>, 검색일자: 2025. 3. 19.
 일본 재무성, 「国民負担率の国際比較(OECD加盟36カ国)」, <https://www.mof.go.jp/policy/budget/topics/futanritsu/sy202503c.pdf>, 검색일자: 2025. 3. 21.

48) 1차 속보치에서 발표된 계절조정 전기 대비 2024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7%(연율 2.8%), 명목 GDP 성장률은 1.3%(연율 5.1%). 출처: 일본 재무성, 「2024년10-12 月期四半期別 GDP 速報 (1次速報值)」,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files/2024/qe244/pdf/gaiyou2441.pdf, 검색일자: 2025. 3. 21.

표 8 일본의 분기별 GDP 및 각 구성요소 증가율(전분기 대비, 계절조정) 추이

(단위: %, %p)

구분	2023년	2024년					2024년 ¹⁾
	Q4	Q1	Q2	Q3	Q4(1차 속보치)	Q4(2차 속보치)	
실질 GDP	0.0	-0.5	0.8	0.4	0.7	0.6	2.2
국내수요	0.1	-0.3	1.1	0.5	-0.1	-0.2	-0.7
민간수요	0.3	-0.3	0.9	0.7	-0.1	-0.3	-1.1
민간최종소비지출	-0.1	-0.5	0.8	0.7	0.1	0.0	0.1
민간주택	-1.1	-2.7	1.4	0.5	0.1	-0.2	-0.8
민간기업설비	1.9	-0.4	1.1	-0.1	0.5	0.6	2.3
민간재고변동	(-0.0)	(0.2)	(0.0)	(0.1)	(-0.2)	(-0.3)	-
공적수요	-0.3	-0.3	1.8	-0.1	0.1	0.1	0.4
정부최종소비지출	-0.0	0.2	1.0	0.1	0.3	0.4	1.6
공적고정자본형성	-1.6	-2.1	5.7	-1.2	-0.3	-0.7	-2.7
공적재고변동	(0.0)	(-0.0)	(-0.0)	(0.0)	(-0.0)	(-0.0)	-
재화·서비스 순수출 ²⁾	(-0.1)	(-0.3)	(-0.3)	(-0.1)	(0.7)	(0.7)	-
재화·서비스 수출	2.9	-4.1	1.7	1.5	1.1	1.0	4.1
재화·서비스 수입	3.1	-2.8	3.0	2.0	-2.1	-2.1	-8.3
명목 GDP	0.3	-0.0	2.2	0.7	1.3	1.1	4.6
GDP 디플레이터	0.3	0.5	1.3	0.3	0.6	0.6	-

주 1) 2024년 4분기 GDP 2차 속보치에서 발표된 연율 환산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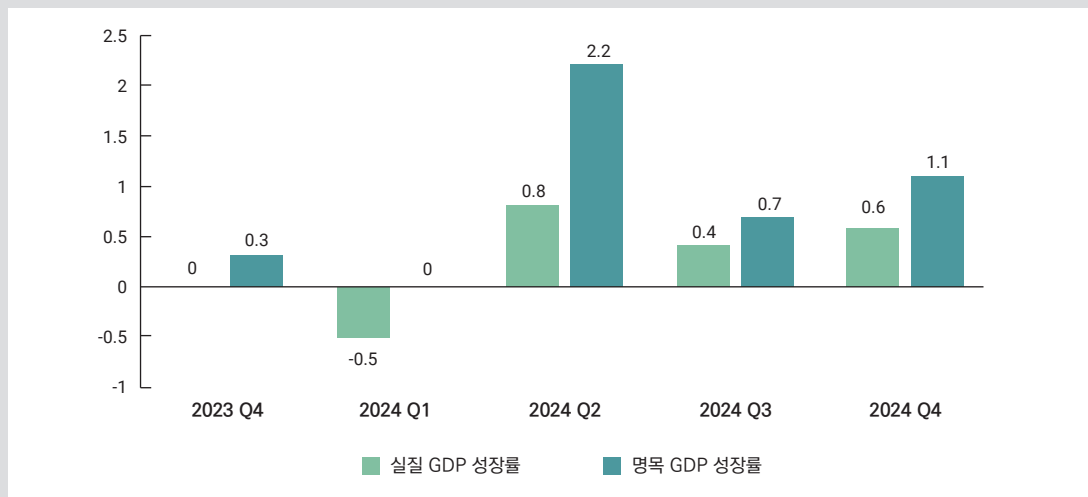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1. () 안의 수치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출처 일본 내각부, 「2024년 10~12월 4분기별 GDP 2차속보치」, p. 1 표 1-1 및 p. 2 표 1-2 및 p. 5 표 3-1 및 p. 7 표 3-3 재구성

그림 4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계절조정) 추이

(단위: %)



출처 일본 내각부, 「2024년 10~12월 4분기별 GDP 2차속보치」, p. 5 표 3-1 및 p. 7 표 3-3 참고하여 작성



독일

- ◆ 독일 노동사회부, 2025년 연금 가치 조정안 발표 (2025. 3. 6.)⁴⁹⁾
 - 독일 노동사회부는 2025년 7월 1일자로 독일의 연금을 3.74% 인상하기로 발표
 - 독일 사회법전 제6권(SGB VI)50 제255조e(연금 수준 보호조항)에 따라 최소 보장 수준(평균 소득의 48%)을 유지하기 위해 상향 조정
 - 2025년 연금 가치(Aktueller Rentenwert)는 기존 39.32유로에서 40.72유로로 인상
 - * 연금 가치는 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 1포인트의 가치를 유로화로 표시한 금액으로, 한 사람이 1년 동안 평균 수준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시 1포인트 획득
 - ▶ 45년간 평균 소득으로 근로한 연금 수급자 기준 연금액은 45포인트x40.72유로= 약 1,832유로/월
- ◆ 독일 연방의회, 부채제동장치(Debt Brake) 관련 기본법 개정안 채택(2025. 3. 18.)⁵¹⁾ 및 연방참의원, 기본법 개정안 승인(2025. 3. 21.)⁵²⁾
 - SPD 및 CDU/CSU연합에서 발의한 기본법(제109조, 제115조 및 제143조h) 개정안 초안이 의회 투표 결과 733표 중 512표 찬성으로 채택
 - 기본법 개정안 내용은 구조적 순차입을 GDP의 0.35% 이하로 제한하는 부채제동장치에서 국방비 지출을 면제하고, 2045년까지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5,000억유로 규모의 특별기금 설립
 -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법 제109조와 제115조에 명목 국내총생산의 1%를 초과하는 방위비 지출과 특정 안보정책 지출은 부채제동장치에서 면제된다고 규정
 - 제143조h⁵³⁾에 2045년까지 기후 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등 특별 자금을 규정
 - * 특별기금은 원칙적으로 부채제동장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국가적 비상사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명확한 목적 규정, 일정 기간 내 상환계획 수립 등과 같은 경우에서 구조적 순차입 한도의 예외 허용
 - ▶ 기후변화기금(KTF)에 1,000억유로가 투입될 예정
 - 또한, 연방정부에만 적용되었던 신규차입이 주

49) 독일 노동사회부, "Renten steigen zum 1. Juli um 3,74 Prozent," 2025. 3. 6., https://www.bmas.de/D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25/renten-steigen-zum-ersten-juli.html?cms_showNoGesetzesstatus=true&cms_showNoStatus=true, 검색일자: 2025. 3. 25.
독일 연방내각, "Die Renten steigen," 2023. 3. 21.,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rentenerhoehung-ost-west-angleichung-2172482>, 검색일자: 2023. 3. 27.

50) 기본법상 헌법적 의무가 아님에도 정치적, 법적 관행상 배정되는 구조로 독일의 사회법전 제6권 213조에서 연방정부의 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상의 의무적 지출. 일반회계에서 연금보험기금으로의 지출은 일반회계이며, 실제 수급자에게 연금지급은 기금에서 이루어짐.

51) 독일 연방의회, "Haushaltsausschuss beschließt Änderungen des Grundgesetzes," 2025. 3. 16.,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5/kw11-pa-haushalt-sonntag-1056790>, 검색일자: 2025.3.19.
독일 연방의회, "Mehrheit für Reform der Schuldenbremse: 512 Abgeordnete stimmen mit Ja," 2025. 3. 18.,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5/kw12-de-sondersitzung-1056916>, 검색일자: 2025. 3. 19.

52) 독일 연방참의원, "BundesratKOMPAKT: Schuldenbremse und Sondervermögen - Bundesrat stimmt Grundgesetzänderungen zu," 2025. 3. 21., <https://www.bundesrat.de/DE/plenum/bundesrat-kompakt/25/1052/1052-pk.html?nn=4732016#top-34>, 검색일자: 2025. 3. 26.

53) 2020년 9월 발효된 143조h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감소한 지방자치단체의 무역 세수입에 대해 지급한 일회성 보상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2021년 1월부터 폐지

- 정부 차원에서 적용되면서 명목 GDP의 최대 0.35%까지 차입 가능(기존에는 신규 차입 금지)
- 기본법 개정안은 3월 21일 연방참의원(상원)에서 헌법 개정을 위해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며 승인되었으며, 법률 공포 즉시 발효 예정

◆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대한 추가자금(Weitere Mittel)⁵⁴⁾ 승인(2025. 3. 21.)⁵⁵⁾

※ 3월 15일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을 포함한 25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러시아에 대한 휴전압박과 유럽 및 국제 동맹국들과의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약속

-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지원을 위한 추가자금 약 25억유로와 2029년까지 83억유로 규모의 지출부담승인(Verpflichtungsermächtigung)⁵⁶⁾ 예산을 편성
 - 국방부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 제공,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독일군의 장비 보충을 위한 재조달, 몰도바의 시민 및 군사보안 역량 강화 지원에 쓰일 예정
- 연방정부는 휴전이 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춰야 하며, 군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



프랑스

예산·결산 등

◆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5년 예산법(Loi de finances pour 2025)⁵⁷⁾(2025. 2. 14.) 및 사회보장부문 예산법(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5)⁵⁸⁾(2025. 2. 28.) 최종 승인 및 공포

- (배경) 의회가 정부안을 받아 양원 공동협의회(commission mixte paritaire)에서 수정 및 합의한 공동 결의안을 기준으로 프랑스 정부가 헌법 제49조3항을 발동(예산법안 2025년 2월 5일, 사회보장부문 법안 2025년 2월 12일)하여, 의회가 두 법안을 채택한 것으로 간주됨⁵⁹⁾

54) 추가예산(Nachtragshaushalt)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추가예산은 공식적인 예산의 수정절차를 의미하나 추가자금은 특정 부문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추가로 할당되는 제한적 범위의 자금으로 공식적인 수정절차 또는 기존예산 내에서의 조정이나 예비비로 충당될 수 있음

55)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 "Haushaltsausschuss stimmt weiteren Ukraine-Hilfen zu," 2025. 3. 21., <https://www.bundestag.de/presse/hib/kurzmeldungen-1058066>, 검색일자: 2025. 3. 24.

56) 독일 예산법 제38조에 따른 단일 회계연도 원칙에 대한 예외로, 다년간에 걸친 미래 회계연도에 필요한 지출을 해당 회계연도 전에 승인하여 향후 지출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기능을 하며, 국회의 사전 승인에 의해 효력이 발생

57) 프랑스 법률사이트, "LOI n° 2025-127 du 14 février 2025 de finances pour 2025," 2025. 2. 14.,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51168007/?isSuggest=true>, 검색일자: 2025. 3. 10.

58) 프랑스 법률사이트, "LOI n° 2025-199 du 28 février 2025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5," 2025. 2. 28.,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51269481>, 검색일자: 2025. 3. 10.

59) 내각의 헌법 제49조3항 발동 및 의회의 예산법안 채택 간주는 다음 문헌을 참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4), 2025년 2월호 재정동향, 「KIPF 재정동향」, 2025. 3. 10., p.44,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1169>

- (주요 내용)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2025년 예산법과 사회보장부문 예산법 자체에 대해 불신임하지 않았으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헌법 위배 판정

* S&P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은 총 4단계로서 긍정적(Positive), 안정적(Stable), 부정적(Negative), 전망불확실(Developing)로 구성

- S&P는 국가채무 증가, 국가 재정 관련 정치적 교착 상태, 불확실한 경제 성장 전망을 반영해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 프랑스의 신용등급은 'AA-'로 유지
- S&P는 프랑스 정부가 향후 2년동안 대규모 재정 적자를 추가 감축하지 못하거나, 경제 성장률이 장기간 전망을 하회하면 등급 강등의 여지가 있을 언급

기타

- ◆ 국제신용평가사 S&P(Standard & Poor's),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2025. 2. 28.)^{60) 61)}

표 9 2025년 예산법 재정수지 실적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3년 (실적)	2024년 (실적 전망)	2025년 (예측)	2023-2027 중기재정법안 2025년 전망
재정수지(Solde effectif)	-5.5	-6.0	-5.4	-3.7
재정지출 증가율(Evolution de la dépense publique hors crédits d'impôt en volume(%))	-1.0	1.9	1.2	0.8
총조세부담률(Taux de prélèvements obligatoires)	43.2	42.8	43.5	44.4
재정지출(Dépense publique (hors crédits d'impôt))	56.4	56.6	56.8	55.0
공공채무(Dette au sens de Maastricht)	110.0	112.7	115.5	109.6

출처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5년 예산법(LOI n° 2025-127 du 14 février 2025 de finances pour 2025)," 2025. 2. 14.

표 10 2025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 재정수지 실적 및 전망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4년 실적 전망	2025년 예측
건강보험(Maladie)	-15.3	-15.4
산재보험(Accidents du travail et maladies professionnelles)	0.6	0.2
노령보험기금(Vieillesse)	-6.0	-7.5
가족수당기금(Famille)	0.5	0.4
자율연대기금(Autonomie)	1.1	-0.7
전체 사회보장부문(Toutes branches)	-19.0	-23.0
노령연대 포함 사회보장부문(Toutes branches y compris Fonds de solidarité vieillesse)	-18.2	-22.1

출처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5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LOI n° 2025-199 du 28 février 2025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5)," 2025. 2. 28.

60) Le Monde, "S&P gives France an early warning," 2025. 3. 1., https://www.lemonde.fr/en/politics/article/2025/03/01/s-p-gives-france-an-early-warning_6738709_5.html, 검색일자: 2025. 3. 11.

61) 프랑스 국고청(AFT: Agence France Trésor), "FRANCE'S CREDIT RATINGS," <https://www.aft.gouv.fr/en/frances-credit-ratings>, 검색일자: 2025. 3. 11.

- ◆ 프랑스 공공회계 담당 특임 장관 및 고용·보건·연대·가족 장관, 2024년 공공 재정 사기(fraudes aux finances publiques) 검토 보고서 발표(2025. 3. 14.)⁶²⁾
- (배경) 2023년 6월 보조금, 사회보장, 세입, 세관 분야에서 부정 수급, 탈세 등 공공 재정 사기를 퇴치하기 위한 정부 계획이 발표⁶³⁾ 되었으며, 동 보고서는 해당 조치의 초기 결과 평가 및 계획을 수록
- (2024년 평가) 2024년에 공공 재정 사기로 200억 유로가 적발되었으며 회수한 금액은 130억 유로에 상응⁶⁴⁾
- (세입) 2024년 세무 감사 결과로 개인과 기업에게 추정된 금액은 167억 유로로 2023년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 마이닝 등의 세무 감사의 효율성 증가의 영향을 받음
- (사회보장) 허위 신고, 신분 도용 등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사기 금액은 2024년 29억 유로에 상응
- (보조금) 부정 수급과 목적 이외 사용 등으로 적발된 보조금 사기는 2024년 4억 8천만 유로에 달함
- (세관) 보고 의무 위반으로 2024년 압류된 금액은 7,120만 유로에 이룸



영국

- ◆ 영국 총리, 2027-28회계연도부터 국방 예산을 GDP 대비 2.5%로 증액 발표(2025. 2. 25.)⁶⁵⁾
- (배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국제 안보 위협, 급격한 기술 변화, 기후 변화 가속화 등으로 글로벌 불안정성 심화
- 영국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국방 역량 강화가 필요
- (예산 증액) 2027년 4월부터 국방 예산을 현재 GDP 대비 2.3% 수준에서 2.5%로 확대하고, 경제·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다음 의회에서는 3%까지 확대할 계획

62) 프랑스 경제재정부, "Bilan 2024 et perspectives : lutter contre toutes les fraudes," <https://presse.economie.gouv.fr/bilan-2024-lutter-contre-toutes-les-fraudes/>, 검색일자: 2025. 3. 18.

63) 프랑스 경제재정부, "01/06/2023 - Dossier de presse - Feuille de route du plan "Lutte contre toutes les fraudes aux finances publiques", "<https://presse.economie.gouv.fr/01062023-dossier-de-presse-feuille-de-route-du-plan-lutte-contre-toutes-les-fraudes-aux-finances-publiques/>, 검색일자: 2025. 3. 18.

64) 비견할만한 수치로 2023년 프랑스 일반정부 재정지출은 1조 6,099억 유로에 상응함을 참조 (출처: 프랑스 예산국, <https://www.budget.gouv.fr/panorama-finances-publiques>)

65) 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Prime Minister sets out biggest sustained increase in defence spending since the Cold War, protecting British people in new era for national security," Press release, 2025. 2. 25., <https://www.gov.uk/government/news/prime-minister-sets-out-biggest-sustained-increase-in-defence-spending-since-the-cold-war-protecting-british-people-in-new-era-for-national-security>, 검색일자: 2025. 3. 12.; UK Parliament, "UK defence spending," Research Briefing, 2024. 12. 4.,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8175/>, 검색일자: 2025. 3. 12.

- 2027년부터 국방비의 범위를 확장하여 안보 및 정보기관 활동도 포함
- ▶ 이에 따라 2027-28회계연도의 실질적인 국방 지출은 GDP 대비 2.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국방 예산 현황: (2023-24) 539억파운드(실적치), (2024-25) 569억파운드, (2025-26) 598억파운드, 3년 동안의 실질 증가율 2.3%
- (재원 마련) 해외 원조(ODA) 예산을 현재 국민총소득(GNI) 대비 0.5%에서 0.3%로 감축하여 국방 비로 전환
- 단, 재정 상황이 개선되면 ODA 비율을 다시 0.7% 수준으로 복구할 계획
- (효과) 국방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 기대
- 국방비의 68%가 런던 및 남동부 외 지역에 투자됨에 따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방산업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 AI, 자율 시스템, 전투 항공기, 사이버 보안, 미사일, 핵 잠수함, 양자 기술, 조선, 우주 산업 등 미래 성장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 영국 노동·연금부, 고용 촉진을 위한 대규모 복지 개혁 발표(2025. 3. 18.)⁶⁶⁾
 - (현황) 건강 및 장애 관련 복지 예산이 급증하여 2030년까지 연간 700억파운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⁶⁷⁾
 - 주당 10억파운드 이상, 국가의료서비스(NHS) 예산의 3분의 1 이상, 경찰 및 지역사회 안전 예산의 3배 이상에 해당
 - (개혁 추진 방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되, 복지 의존도를 낮추고 근로 참여를 촉진하며, 복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
 - (주요 개혁) ① 근로 불가능한 장애인 보호, ② 취업 지원 강화, ③ 비경제활동 방지, ④ 근로능력평가 시스템 개선, ⑤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중점
 - ① 근로 불가능한 장애인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보장
 - ▶ (소득 보호) 현재 통합급여⁶⁸⁾에서 건강 관련 추가수당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기본수당 인상 혜택을 받으나, 향후 건강 관련 추가수당 감축 계획의 영향은 받지 않음
 - ▶ (근로능력평가⁶⁹⁾ 재심사 폐지) 근로 불가능한 장애 및 평생 장기 질환자의 근로능력평가 재심사를 폐지

66)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Biggest shake up to welfare system in a generation to get Britain working," Press release, 2025. 3. 18., <https://www.gov.uk/government/news/biggest-shake-up-to-welfare-system-in-a-generation-to-get-britain-working>, 검색일자: 2025. 3. 20.;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Pathways to Work: Reforming Benefits and Support to Get Britain Working," 2025. 3.

67) 영국 노동·연금부의 2024년 가을 복지지출 전망(Expenditure and Caseload forecasts) 기준

68) Universal Credit: 4개의 사회보장급여(소득기반 구직자수당, 소득기반 고용 지원수당, 소득보조, 주거급여)와 2개의 조세급여(근로세액공제, 아동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한 급여로, 세분화된 사회보장급여 체계를 간결하게 만들어 복지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에 도입. 실업자, 근로자(정규직, 자영업, 파트타임), 건강 상태로 인한 근로 불가자 중 저소득층이거나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조건은 ① 영국 거주, ② 18세 이상, ③ 국가연금 수급 연령(State Pension age) 미만, ④ 현금, 저축, 투자를 포함한 자산 16,000파운드 이하. 급여는 기본수당(standard allowance)과 추가수당(extra amounts)으로 구성되며, 기본수당은 청구인의 연령과 동거 여부(싱글/커플)에 따라 정해지고, 추가수당은 동거 자녀 유무, 자녀의 장애 여부, 자녀 양육비, 청구인 장애 여부, 청구인 건강 상태, 주거비 등과 관련하여 지급(<https://www.gov.uk/universal-credit>, 검색일자: 2025. 3. 24.)

69) Work Capability Assessment(WCA): 복지 혜택 수급자들의 근로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됨. ① 근로 가능(capable for work): 정규 구직 활동이 요구됨, ② 근로 제한(limited capability for work, LCW): 일부 근로가 가능하나 건강 상태로 인해 즉시 구직 활동이 요구되지 않으며, 대신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③ 근로 관련 활동 제한(limited capability for work and work related activity, LCWRA): 근로 활동이 불가능하며, 구직 의무가 면제되고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음(<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niversal-credit-if-you-have-a-disability-or-health-condition-quick-guide/universal-credit-if-you-have-a-disability-or-health-condition>, 검색일자: 2025. 3. 21.)

② 맞춤형 취업 지원 확대

- ▶ (취업 지원 패키지) 10억파운드 규모의 취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장애인 및 장기 질환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
- ▶ (청년층 취업 지원 강화) 통합급여의 건강 관련 추가수당 적용 연령을 현재 18세 이상에서 22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절감 예산은 청년층 취업 지원 및 훈련에 재투자

③ 조기 개입을 통한 장기 비경제활동 방지

- ▶ (근로 접근성 개선) 보조기구, 가전제품, 보조기술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
- ▶ (실업보험 개편) 기여기반 구직자수당⁷⁰⁾과 기여기반 고용·지원수당⁷¹⁾을 통합하여 비소득심사(non-means tested) 실업급여로 일원화하고, 지급 기간에 제한을 적용

④ 근로능력평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회복

- ▶ (근로능력평가 폐지) 근로능력평가를 폐지하고 PIP 평가⁷²⁾ 기반의 새로운 단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일상 생활 영향 중심으로 근로능력을 평가

- ▶ (장기적 PIP 평가 개혁)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검토를 바탕으로 PIP 평가 방식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
- ▶ (장애급여 재심사 재개) 2021년 이후 중단된 장애급여(incapacity benefit)에 대한 재심사를 재개(단, 평생 일할 수 없는 경우와 말기 질환자는 면제)

⑤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 ▶ (PIP 수급자격 강화) 기존 수급자격 외에도 일상 생활 항목 하나에 최소 4점 충족 필요
- ▶ (통합급여 조정(rebalancing)) 2029-30회계연도까지 기본수당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여 연간 775 파운드(25세 이상 독신자 기준)를 추가 지원⁷³⁾

* 이는 현재 건강 관련 추가수당이 기본수당보다 커 근로 불능을 증명하여 혜택을 받으려는 유인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 (효과) 2029-30회계연도에 50억파운드 이상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

70) Jobseeker's Allowance(JSA): 근로 능력은 있으나 실업 상태이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을 지원하는 실업급여로, 소득기반 JSA(통합급여로 대체)와 기여기반 JSA로 구분되며, 최대 6개월(182일) 동안 지급됨.(<https://www.gov.uk/jobseekers-allowance>, 검색일자: 2025. 3. 25.)

71)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ESA): 건강 문제나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제한된 사람을 위한 지원금으로, 소득기반 ESA(통합급여로 대체)와 기여기반 ESA로 구분되며, 근로능력평가(WCA) 결과에 따라 근로 제한(LCW) 그룹의 경우 최대 12개월, 근로 관련 활동 제한(LCWRA) 그룹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지급됨.(<https://www.gov.uk/employment-support-allowance>, 검색일자: 2025. 3. 24.)

72) 현재 PIP의 경우, 일상 생활(daily living) 10개 항목이나 이동성(mobility) 2개 항목에서 최소 8점을 받아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각 항목별 점수는 0점에서 최대 12점까지 부여되며,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반영하여 점수가 결정됨. 예를 들어, 음식 준비 항목에서는 도움 없이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고 요리할 수 있으면 0점, 반면 음식 준비 및 요리를 전혀 할 수 없으면 8점이 부여됨. 이러한 방식으로 평가된 점수를 합산하여 지원 여부 및 급여 수준이 결정됨.(<https://www.benefitsandwork.co.uk/personal-independence-payment-pip/pip-points-system>, 검색일자: 2025. 3. 25.)

73) 부부와 25세 미만 독신자의 기본수당도 동일한 비율의 증가 적용



호주

예산·결산 등

◆ 호주 연방정부, 2025-26회계연도⁷⁴⁾ 예산안 발표 (2025. 3. 25.)⁷⁵⁾

- (경제) 호주 경제는 2024-25회계연도에 1.5%로 소폭 성장이 회복되었으며, 2025-26회계연도 2.25%, 2026-27회계연도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세계 경제는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새로운 무역 장벽이 세계 무역, 투자 및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
- 최근 사이클론 Alfred로 인한 피해는 분기별 성장률을 최대 0.25%p까지 일시적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되나 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다시 실질 GDP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 완화, 견고한 노동시장,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1인당 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은 2024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소비와 경제의 점진적 회복을 견인할 전망
- (고용) 2024-25회계연도에는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여 4.25%에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
- 견고한 노동시장 상황과 물가상승률 완화로 인해 5분기 연속으로 연간 실질 임금이 상승
- (물가) 소비자 및 기초 물가상승률 모두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2024-25회계연도 물가상승률은 2.5%로 예상
- 2024년 12월 기준 연간 물가상승률은 2.4%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2년 관찰된 물가상승률 최고치의 3분의 1 이하 수준

표 11 2025-26 Budget 주요 경제 변수 전망

(단위: %)

구분	실적	전망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8-29
실질GDP성장률	1.4	1.5	2.25	2.5	2.75	2.75
고용성장률	2.2	2.75	1	1.25	1.5	1.5
실업률	4.0	4.25	4.25	4.25	4.25	4.25
소비자물가지수	3.8	2.5	3	2.5	2.5	2.5
임금물가지수	4.1	3	3.25	3.25	3.5	3.75
명목GDP성장률	4.1	4.25	3.25	4	5.25	5.5
GDP 디플레이터	2.7	2.75	1	1.5	.	.

주 실질 GDP성장률은 연평균 증가율, 고용성장률·소비자물가지수·임금물가지수는 2분기(June Quarter) 기준 연간 증가율, 실업률은 2분기(June Quarter) 기준

출처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5-26," Paper No.1, p. 6, <Table 1.1>, 2025. 3. 25.

74) 2025-26회계연도: 2025. 7~2026. 6월

75) 호주 예산안 홈페이지, <https://budget.gov.au/>, 검색일자: 2025. 3. 25.

- 물가상승률은 반기경제·재정전망(MYEFO) 보고서의 예상⁷⁶⁾보다 빠른 2025년 중반에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 내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
- (재정) 2024-25회계연도 현금수지(underlying cash balance)는 276억호주달러(GDP 대비 -1.0%), 2025-26회계연도에는 421억호주달러(GDP 대비 -1.5%)로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에는 적자가 소폭 개선될 전망
- (수입) GDP 대비 수입(Receipts) 비중은 2024-25회계연도에 25.3%에서 2026-27회계연도 25.6%까지 증가한 후, 2028-29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25.3%로 하락할 전망
- (지출) 2025-26회계연도 지출(Payments)은 총 7,775억호주달러(GDP 대비 27.0%)로 2024-25회계연도 대비 460억호주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2028-29회계연도에 GDP 대비 26.4%까지 감소할 전망
- (채무) 총채무는 2025-26회계연도에 GDP 대비 35.5%를 나타낼 전망이며, 2029-30회계연도에 정점에 도달한 후 2035-36회계연도에 31.9%로 개선될 전망
- ▶ 순채무는 2025-26회계연도에 GDP 대비 21.5%를 기록한 후 전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
- (예산 중점방향) “생계 지원 및 미래를 위한 계획”을 주제로 한 이번 예산안은 1)생계비 부담 완화, 2)메디케어 강화, 3)주택 구입 지원, 4)보다 강한 경제, 5)기회 확대 및 평등 증진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 반영
- (생계비 부담 완화) 납세자에 대한 세금 감면,⁷⁷⁾ 에너지 요금 감면⁷⁸⁾ 추가 지원, 노인 요양 간호사 및

표 12 2025-26 Budget 주요 재정 변수 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

구분	실적	전망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8-29
수입(Payments) ¹⁾	688.6	703.9	735.4	766.0	797.4	840.8
GDP 대비 비율	25.8	25.3	25.5	25.6	25.3	25.3
지출(Receipts) ¹⁾	672.8	731.5	777.5	801.7	834.6	877.7
GDP 대비 비율	25.2	26.2	27.0	26.8	26.5	26.4
현금수지 ²⁾ (Underlying Cash Balance)	15.8	-27.6	-42.1	-35.7	-37.2	-36.9
GDP 대비 비율	0.6	-1.0	-1.5	-1.2	-1.2	-1.1
총채무(Gross Debt)	906.9	940.0	1,022.0	1,092.0	1,161.0	1,223.0
GDP 대비 비율	33.9	33.7	35.5	36.5	36.9	36.8
순채무(Net Debt)	491.5	556.0	620.3	676.3	714.1	768.2
GDP 대비 비율	18.4	19.9	21.5	22.6	22.7	23.1

주 실질GDP성장률은 연평균 증가율, 고용성장률·소비자물가지수·임금물가지수는 2분기(June Quarter) 기준 연간 증가율, 실업률은 2분기(June Quarter) 기준

출처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5-26,” Paper No.1, p. 6, <Table 1.1>, 2025. 3. 25.

76) 반기경제·재정전망 보고서는 2024년 12월에 발표되었으며 당시 중앙은행 목표 범위 내로 물가상승률이 복귀하는 시점은 2025년 말로 예상함(“KIPF 재정동향 2024년 12월호” 참고)

77) 소득 18,201-45,000호주달러 구간의 납세자는 2026년 7월 1일부터 소득세율이 16%에서 15%로 인하되며 2027년 7월에는 다시 14%로 추가 인하

78) 모든 호주 가구와 기업들에 대해 추가 150호주달러 에너지 요금 추가 지원 계획

- 영유아 보육 관련 근로자 임금 인상, 저렴한 의약품 지원, 학자금 대출 감면 등을 통한 생계비 완화
- (메디케어 강화) 벌크 빌링⁷⁹⁾ 지원금 인상, 공공 병원 자금 지원, 메디케어 긴급 클리닉 추가, 의료진 확대, 여성 건강을 위한 의료 지원 확대 등 메디케어 강화 중점 추진
- (주택 구매 지원) 더 많은 주택 건설, Help to Buy⁸⁰⁾ 제도 확대, 2년간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 금지 등 국민의 주택 구매 지원 확대
- (보다 강한 경제) 청정에너지 기술 투자, 친환경 금속 생산 업체 지원 등 Future made in Australia를 위한 정책 시행, 중소기업 지원 확대, 무역 다각

- 화 지원, Non-Compete⁸¹⁾ 조항 폐지, 국가 생산성 기금 투자를 통한 경쟁 정책 활성화 등 보다 강한 호주 경제 건설을 위한 투자에 집중
- (기회 확대 및 평등 증진) 여성 지원 정책, 원주민 지역사회 투자, 노인 돌봄 개혁 지속 지원, 장애인 지원 등 복지 혜택 확대 내용 포함
- (지출) 2025-26회계연도 발생주의 기준 일반 정부 지출(Expenses)은 7,857억호주달러이며, 2028-29회계연도에는 8,894억호주달러까지 증가할 전망
- 2025-26회계연도부터 2028-29회계연도까지 국방(18.9%), 교육(11.8%), 사회보장 및 복지

표 13 기별별 지출 전망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분	전망					연평균 증가율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8-29	
일반 공공서비스	33,052	31,418	31,695	32,502	32,829	-0.2%
국방	49,344	51,483	52,567	56,487	61,238	5.5%
공공질서 및 안전	8,778	9,145	8,045	7,830	7,815	-2.9%
교육	63,503	54,030	56,157	58,395	60,397	-1.2%
보건	117,067	124,803	125,901	130,423	134,767	3.6%
사회보장 및 복지	274,901	290,966	299,436	309,531	323,612	4.2%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18,122	8,952	7,021	5,562	5,125	-27.1%
여가 및 문화	5,859	5,867	5,709	5,974	6,378	2.1%
연료 및 에너지	16,437	19,237	15,079	16,213	18,273	2.7%
농림 임업·수산	4,461	4,427	4,152	3,511	3,156	-8.3%
광업·제조·건설	5,866	5,522	5,511	5,947	6,663	3.2%
교통·통신	15,980	16,557	16,380	16,320	16,484	0.8%
기타 경제부문	14,063	13,558	12,636	12,263	12,285	-3.3%
기타	135,322	149,706	166,306	181,992	200,374	10.3%
총액	762,756	785,670	806,594	842,949	889,397	3.9%

출처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5-26," Paper No.1, p.117, <Table 5.3>, 2025.3.25., 연평균 증가율은 저자 작성.

79) 의사가 메디케어에 직접 청구하여 의료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환자는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80) 연방정부의 주택 구입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산층 이하 국민이 첫 주택 구입 시 정부와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방식이며, 정부는 신규 주택 비용의 최대 40%까지 출자를 제공

81) 동종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며 육아, 건설, 미용업 등이 포함

- (11.2%), 보건(8.0%) 등의 부문에서 높은 지출 증가율이 예상됨
- 2024-25회계연도부터 2028-29회계연도까지 기능별 지출 전망 기준 연평균 증가율은 국방(5.5%), 사회보장 및 복지(4.2%), 보건(3.6%) 순으로 높게 나타남⁸²⁾

기타

- ◆ 호주 연방정부 및 주정부, 사이클론 Alfred 관련 피해 복구 지원 대책 발표(2025. 3. 11.)⁸³⁾
 - (배경) 3월 8일 상륙한 사이클론 Alfred로 인해 퀸즐랜드 남동부와 NSW 북부 지역은 30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정전, 지역 사업체 및 학교 임시 휴무·휴교, 주민 대피 등 큰 피해를 입음
 - (지원내용) 연방정부는 피해 지역 주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 긴급지원금, 재난 복구 수당, 호주 정부 재난 복구 지급금 등으로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해당 내용은 2025-26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
- 개인 긴급지원금(Personal Hardship Assistance Payment): 재해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180호주달러) 및 가족(최대 900호주달러)에게 식량, 의류, 의약품 및 긴급 숙박시설 등 필수적인 비용에 대한 일회성 재정지원을 제공
- 재난 복구 수당(Disaster Recovery Allowance): Alfred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개인에게 최대 13주간 소득 지원
- 호주 정부 재난 복구 지급금(Australian Government Disaster Recovery Payment (AG-DRP)): Alfred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은 개인에게 일회성 복구 지급금 제공 등
- (지원금액) 연방정부는 3월 25일 발표한 예산안에서 Alfred를 포함한 최근의 자연재해 관련 복구 비용 지급을 위해 12억호주달러를 배정

82) 기타 제외

83) 호주 총리실, "Financial assistance on the way for Northern New South Wales residents recovering from Cyclone Alfred," 2025. 3. 11., <https://www.pm.gov.au/media/financial-assistance-way-northern-new-south-wales-residents-recovering-cyclone-alfred>, 검색일자: 2025. 3. 18.
NSW 주정부, "Tropical Cyclone Alfred grants, payments and financial support," 2025. 3. 13., <https://www.nsw.gov.au/emergency/tropical-cyclone-alfred-recovery-updates/grants-payments-and-financial-support>, 검색일자: 2025. 3. 19.



중국

-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제14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3차 회의에 2025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초안 검토 요청 (2025. 3. 5.)⁸⁴⁾
 - (주요 목표) GDP 성장률 5%,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CPI) 2%,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 3% 절감, 도시 실업률 5.5%, 도시 지역 1,20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곡물생산량 약 1조 4천억근(斤) 달성
 - (정책 방향) 안정된 상황에서 발전 및 혁신을 추구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을 역동적으로 조정하여 효과성 증진
 - (적극적 재정정책) 재정 지출의 강도를 높여 핵심 분야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지출구조를 최적화
- ▶ 1조 3천억 위안의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하여 양중(两重)⁸⁵⁾ 및 양신(两新)⁸⁶⁾ 프로젝트 지원하고, 대형 국유 상업은행 기본 자기자본(Tier 1)⁸⁷⁾ 보완 목적으로 5천억 위안의 특별 국채 발행
- ▶ 국민 생활 및 소비 촉진을 위해 4조 4천억 위안의 지방 정부 특별채권 발행
- ▶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일반 이전 지출의 강도를 높여
 - 저개발 지역 정부에 대한 '3대 보장(三保)⁸⁸⁾의 근간 확립
- ▶ 2025년 중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2024년 대비 1조 6천 억위안⁸⁹⁾ 증가한 5조 6,500억위안이 될 것으로 예상
 - (통화정책 완화) 지급준비율 및 이자율의 적시 인하 및 풍부한 유동성 유지 등 통화정책의 전반적인 완화
 - (국민 생활지향성 강화) 국민 생계 증진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이를 통한 산업 발전의 선순환을 유도
 - (정책 조정 및 협력) 재정, 통화, 고용, 산업, 소비, 환경 보호, 규제와 같은 다양한 정책들의 목표, 도구, 시기, 강도 및 주기의 일치 정도 등을 조정하여 정책 시너지 제고
- (주요 과제) ①내수 확대, ②현대 산업 시스템 구축, ③과학기술 및 교육을 통한 국가혁신체계 마련, ④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 구현, ⑤대의 개방 확대, ⑥기초 안보 역량 구축, ⑦도시 및 농촌 진흥, ⑧지역 연계발전 이행 지속, ⑨친환경 발전 추진, ⑩민생 및 사회 안정 강화의 10가지 측면을 강조

84) 중국 신화통신(新华社), 「关于2024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执行情况与2025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草案的报告(摘要)」, 2025. 3. 6.,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503/content_7010838.htm, 검색일자: 2025. 3. 20.

85) 국가 중대 전략 및 정치·군사·금융 등 중점분야의 안보 능력과 관련한 프로젝트로, 2024년까지는 도시 가스, 배수 및 기타 지하 배관망과 오래된 도시 공동체 개조와 같은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중점 (중국 중앙정부(中华人民共和国 中央人民政府), 「中国经济新看点: 高质量做好“两重”建设」, 2024. 10. 28., https://www.gov.cn/zhengce/202410/content_6983392.htm, 검색일자: 2025. 3. 20.)

86) 대규모 설비 업데이트 및 소비자 교체 관련 프로젝트로, 장비 갱신 대출 할인, 자동차 폐차 및 리뉴얼, 휴대폰, 태블릿 등 디지털 신제품 구매 보조금, 주택 개선을 위한 소비재 교체 지원 등이 포함

87) BIS 자기자본비율의 분자를 구성하는 자기자본 중 보통주 자본(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과 기타기본자본(14개 요건을 충족하는 기타기본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등)을 함께 지칭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2020. p.66, p.72, p.125)

88) 소규모 지방 정부의 기본적인 민생과 임금, 운영 자금을 보장

89) 2025.3.24.고시 기준 1위안은 한화약 202원



스웨덴

- ◆ 스웨덴 통계청·재무부, 2024년 4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5. 2. 28., 2025. 3. 19.)^{90) 91)}
- 스웨덴의 2024년 4분기 GDP 성장률은 재화의 순수출과 총고정자본형성의 증가로 인해 전분기 대비 0.8% 증가
- 이에 대해 재무부는 스웨덴 경제가 2024년 4분기 GDP 성장, 투자, 가계소비 증가로 인해 2024년 하반기에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였으며 2025년 및 2026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 스웨덴 노동부·재무부·농촌인프라부, 경기부양책 발표(2025. 3. 21.)⁹²⁾
- (제안 배경) 스웨덴 경제는 국내수요 증가에 힘입어 경제회복이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스웨덴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제기
- (예산규모) 관련 부처가 58억크로나⁹³⁾ 규모의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4월 총계재정법안⁹⁴⁾과 함께 의회에 제출할 예정
- (주요 사업) 경기부양책은 크게 ROT 세액공제율* 인상, 주택건설 및 도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노동시장 회복을 위한 교육 이니셔티브로 구성

* ROT 세액공제는 주택소유자 개인이 주택 수리·유지보수·재건축 작업을 위해 전문업체에 의뢰할 때 발생하는 비용(재료비, 장비비, 출장비 등을 제외한 인건비만)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⁹⁵⁾

90) 스웨덴 통계청, "BNP ökade fjärde kvartalet 2024," 2025. 2. 28., <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nationalrakenskaper/nationalrakenskaper/nationalrakenskaper-kvartals-och-arsberakningar/pong/statistiknyhet/nationalrakenskaper-4e-kvartalet-2024/>, 검색일자: 2025. 3. 19.

91) 스웨덴 재무부, "Återhämtningen i svensk ekonomi är påbörjad," 2025. 3. 19.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3/aterhamntningen-i-svensk-ekonomi-ar-paborjad/>, 검색일자: 2025. 3. 21.

92) 스웨덴 노동부·재무부·농촌인프라부, "Satsningar för att stötta ekonomins återhämtning," 2025. 3. 21.,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3/satsningar-for-att-stotta-ekonomins-aterhamntning/>, 검색일자: 2025. 3. 25.

93) 원화로 약 8,432억 규모(2025.3.24. 오후 23:50 환율 기준)

94) 스웨덴의 예산 편성 주기는 다음과 같음. 예산안의 경우 전년도 4월 총계재정법안에서 사전예산서 형태로 먼저 발표되며, 약 5개월 후인 9월에 본예산이 발표됨. 이후 3개월 후인 12월에 의회를 통해 확정함.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통상적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발표하는 4월 총계재정법안이나 9월 본예산과 함께 발표함(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다른 시기에도 편성이 가능). 예를 들어,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4월 총계재정법안과 9월 본예산에서 발표하여 2024년 12월 의회에서 확정하였음. 한편,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는 2025년 4월 총계재정법안과 9월 본예산에서 발표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2025년 2월에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

95) Sweden's solar tax incentives in 2023: ROT and Green Deduction (grön teknik), <https://solarstone.com/blog/swedens-solar-tax-incentives-in-2023#what-is-the-rot-deduction>, 검색일자: 2025. 3. 25. ; Sweden - ROT & RUT avdrag, <http://impact-phs.eu/national-practices/sweden-rot-rut-avdrag/>, 검색일자: 2025. 3. 25. ; 스웨덴 국세청, Rot och rut - priva 제도 설명, <https://skatteverket.se/privat/fastigheterochbostad/rotarbeteochrutarbete.4.2e56d4ba1202f95012080002966.html>, 검색일자: 2025. 3. 25.

표 14 스웨덴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¹⁾

(단위: 전분기 대비 %)

구분	2023Q1	2023Q2	2023Q3	2023Q4	2024Q1	2024Q2	2024Q3	2024Q4
GDP 성장률	0.2	-0.3	0.3	-0.2	0.8	-0.3	0.3	0.8
가계 최종 소비	-1.8	0.2	0.0	0.5	-0.6	-0.2	0.0	0.7
일반 정부 소비	0.1	0.3	0.0	0.4	0.3	0.1	0.4	0.1
총고정자본형성 ²⁾	-0.3	-0.1	0.1	-1.6	0.2	-1.7	0.3	1.8
수입	-0.2	0.2	-1.6	0.9	0.6	-0.6	1.7	-0.5
수출	1.1	-0.2	1.6	0.3	-0.1	1.0	0.6	0.7

주 1) 계절 조정 데이터

2)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출처 스웨덴 통계청, "GDP increased in the fourth quarter 2024," 2025. 2. 28., GDP - Expenditure approach 및 National Accounts, quarterly and annual estimates를 참고하여 재구성.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팀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Vol.346

월간

재정포럼



QR코드로 만나는
내 손안의 재정포럼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25년 4월 17일 발행 | 제345호 | 1996년 5월 31일 등록 | 세종라00007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전화(044) 414-2132 | 월간 | ISSN 1226-2269 04